

# 2017년도 재무국소관 세입세출예산안

## 검 토 보 고

### I. 개요

#### 1. 세입예산안

■ 재무국 소관 2017년 세입예산은 전년도 14조 8,240억 4천 4백만원 대비 8.9% 증액된 16조 1,483억 8천 1백만원임.

#### <2017년도 재무국소관 세입예산안>

(단위:백만원)

구 분	2016년도	2017년도	2016년 대비 증감	증감율 (%)
<b>총 계</b>	14,824,044	16,148,381	1,324,337	8.9
<b>지방세수입</b>	14,125,773	15,555,376	1,429,603	10.1
지방세	14,125,773	15,555,376	1,429,603	10.1
보통세	12,500,921	13,753,517	1,252,596	10.0
목적세	1,399,604	1,568,562	168,958	12.1
지난연도수입	225,248	233,297	8,049	3.6
<b>세외수입</b>	698,271	593,005	-105,266	-15.1
경상적세외수입	38,417	37,511	-906	-2.4
재산임대수입	14,721	10,849	-3,872	-26.3
사용료수입	1,049	1,057	8	0.7
수수료수입	591	603	12	2.1
이자수입	22,056	25,002	2,946	13.4
임시적세외수입	659,854	555,494	-104,360	-15.8
재산매각수입	610,478	511,875	-98,603	-16.2
과징금및과태료등	1,274	1,173	-102	-8.0
기타수입	43,769	33,724	-10,044	-22.9
지난연도수입	4,332	8,722	4,390	101.3

# 시 세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6년도	2017년도	2016대비 증감	증감율 (%)
<b>합 계</b>	14,125,773	15,555,376	1,429,603	10.1
<b>지 방 세</b>	14,125,773	15,555,376	1,429,603	10.1
<b>보 통 세</b>	12,500,921	13,753,517	1,252,596	10.0
취 득 세	3,302,152	4,007,054	704,902	21.3
주 민 세	420,847	478,803	57,956	13.8
재 산 세	2,027,874	2,166,398	138,524	6.8
자 동 차 세	1,039,334	1,054,541	15,207	1.5
레 저 세	129,457	126,768	-2,689	-2.1
담 배 소 비 세	499,676	634,255	134,579	26.9
지 방 소 비 세	950,428	1,055,931	105,503	11.1
지 방 소 득 세	4,131,153	4,229,767	98,614	2.4
<b>목 적 세</b>	1,399,604	1,568,562	168,958	12.1
지역자원시설세	252,023	258,985	6,962	2.8
지 방 교 육 세	1,147,581	1,309,577	161,996	14.1
<b>지난연도 수입</b>	225,248	233,297	8,049	3.6

## 세외수입 등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6년도	2017년도	2016대비 증감	증감율 (%)
<b>세 외 수 입</b>	698,271	593,005	-105,266	-15.1
<b>경 상 적 수 입</b>	38,417	37,511	-906	-2.4
<b>재 산 임 대 수 입</b>	14,721	10,849	-3,872	-26.3
공유재산임대료	14,721	10,849	-3,872	-26.3
<b>사 용 료 수 입</b>	1,049	1,057	8	0.7
기 타 사 용 료	1,049	1,057	8	0.7
<b>수 수 료 수 입</b>	591	603	12	2.1
증 지 수 입	591	603	12	2.1
<b>이 자 수 입</b>	22,056	25,002	2,946	13.4
공 공 예 금 이 자	18,227	20,916	2,689	14.8
기 타 이 자 수 입	3,829	4,086	257	6.7
<b>입 시 적 수 입</b>	659,854	555,494	-104,360	-15.8
<b>재 산 매 각 수 입</b>	610,478	511,875	-98,603	-16.2
공유재산매각수입금	610,478	511,875	-98,603	-16.2
<b>과 징 금 및 과 태 료 등</b>	1,274	1,173	-102	-8.0
변 상 금	1,274	1,173	-102	-8.0
<b>기 타 수 입</b>	43,769	33,724	-10,044	-22.9
체 납 처 분 수 입	1	2	1	100.0
시 도 비 반 환 금 수 입	43	41	-2	-4.7
그 외 수 입	43,725	33,682	-10,043	-23.0
<b>지 난 연 도 수 입</b>	4,332	8,722	4,390	101.3
지 난 연 도 수 입	4,332	8,722	4,390	101.3

- 각 사항별로 전년도 최종예산대비 증감 현황을 보면,
  - 지방세는 1조 3,243억 3천 7백만원(전년대비 8.9%)이 증가하였고,
    - 지방세 중 보통세는 1조 2,525억 9천 6백만원(전년대비 10%) 증가,
    - 목적세는 1,689억 5천 8백만원(전년대비 12.1%) 증가,
    - 지난년도수입은 80억 4천 9백만원(전년대비 3.6%) 감소하였음.
  - 세외수입은 1,053억 6천 6백만원(전년대비 15.1%)이 감소하였으며,
    - 경상적세외수입은 9억 6천만원(전년대비 2.4%) 감소,
    - 임시적세외수입은 1,043억 6천만원(전년대비 15.8%) 감소하였음.
- 세입예산과목별 주요증가 내역은
  - 보통세 중 취득세(7,049억원), 주민세(579억원), 재산세(1,385억원), 자동차세(152억원), 담배소비세(1,345억원), 지방소비세(1,055억원), 지방소득세(986억원)
  - 목적세 중 지역자원시설세(69억원), 지방교육세(1,619억원)와
  - 지난년도 수입(80억원) 증가 등임.
  - 세외수입 중 공공예금이자(26억원), 기타이자수입(2억원), 지난년도수입(43억원) 증가 등임.
- 세입예산과목별 주요감소 내역은
  - 보통세 중 레저세(26억원)가 감소하였으며,
  - 세외수입 중 공유재산임대료(38억원), 재산매각 수입(986억원), 변상금 수입(1억원), 기타수입(100억원) 감소 등임.

■ 시민 1인당 담세액은 151만원으로 금년보다 12.2% 증가하였음.

※ 시세 세입(15조 5,553억원)중 지난년도시세(2,332억원)를 제외하고 2015년말 기준 현재 서울시 인구수(10,297천명)로 나눈 것임.

## 2. 세출예산안

- 재무국 소관 2017년 세출예산은 2조 1,641억 7백만원으로 2016년도 당초예산 2조 557억 8천 3백만원 대비 5.3% 증액된 수준이며, 201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감안한 최종예산 2조 2,340억 2천 8백만원 대비 3.1%가 감액된 수준임.

### <2017년도 재무국소관 세출예산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도	2017년도	2016년 대비 증 감	증감율	
총 계	2,055,783	2,164,107	108,324	5.3	
행정관리	소 계	737,559	784,204	46,645	6.3
	행정운영경비	650,205	678,424	28,219	4.3
	사업비	87,354	105,780	18,425	21.1
교 부 금	1,318,225	1,379,904	61,679	4.7	

#### ■ 전략목표별 예산배분은

-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무회계 운영 0.13%인 19억 1천 5백만원,
- 시유재산의 공공성과 수익성 강화 5.61%인 833억 4천 3백만원,
- 계약심사제도의 내실화로 예산절감도모에 0.01%인 8천만원,
-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정세정 구현에 71.4%인 1조 569억 1천만원,
- 세입목표의 차질없는 달성에 22.57%인 3,353억 5천 4백만원,
- 체납시세 징수 목표달성 및 고액체납 관리 강화에 0.54%인 80억 8천 2백만원을 편성하였음.

○ 2017년도 세부사업별 2016년도 당초 예산 대비표

(단위 : 백만원,%)

세 부 사 업 별	2016예산		2017예산	당초 예산대비	
	당초	추경안		증감	비율
합 계	2,055,783	2,234,028	2,164,107	108,324	5.3
물품구매 및 재무관리 효율화	1,477	1,477	1,479	2	0.1
결 산 업 무 추 진	236	236	228	-8	-3.4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운영	30	30	32	2	6.7
계약심의위원회 등 운영	21	21	20	-1	-4.8
전자계약 나라장터 이용수수료 납부	60	60	71	11	18.3
계약정보관리 및 공공구매 업무추진	120	120	86	-34	-28.3
체비지 유상이관 및 시설관리	64,879	195,879	81,261	16,382	25.3
시 유 재 산 관 리 위 임	500	500	500	-	0.0
공유재산 관리 및 운영	2,290	2,290	1,503	-787	-34.4
시유재산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98	98	78	-19	-19.4
계 약 심 사 업 무 추 진	76	76	62	-14	-18.4
설계경제성 심사제 활성화 및 운영	32	32	17	-15	-46.9
세 무 공 무 원 정 책 토 론 회	10	10	10	0	0.0
지 방 세 심 의 위 원 회 운 영	110	110	102	-8	-7.3

세 부 사 업 별	2016예산		2017예산	당초 예산대비	
	당초	최종		증감	비율
재 정 보 전 금	1,016,883	1,016,883	1,054,832	37,949	3.7
한국지방세연구원 법정출연금	0	1,636	1,966	1,966	-
시 세 징 수 교 부 금	301,342	346,794	325,071	23,730	7.9
지방소득세 소득분 특별징수 납세조합 보 조	317	473	444	126	39.7
지방세 고지서 인쇄 통합 관리	831	831	857	26	3.1
상시세금납부 체제 구축	133	133	162	29	21.8
시세 세입 안정적 확보지원	190	190	184	-6	-3.2
전자고지 마일리지 지원	422	422	430	8	1.9
세무공무원 직무역량 강화 연찬회	30	30	30	-	0.0
시세 세원 발굴 지원	219	219	130	-89	-40.6
시세입증대 자치구 협력 및 지원사업	5,000	5,000	5,000	0	0.0
세무종합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1,272	1,272	1,336	64	5.0
세무조사 인터넷 신고시스템 운영	42	42	45	3	7.1
이택스 운영 타당성 분석	0	0	355	355	-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운영및유지보수	718	718	791	73	10.2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인프라 개선	0	0	518	518	-
시세입 및 체납징수 활동 강화	2,514	2,514	2,552	39	1.6
자동차세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업무지원	5,449	5,449	5,239	-210	-3.9
체납징수기법 공유 시·구 합동워크숍	13	13	13	0	0.0
고액 체납 시세 징수 강화	265	265	277	11	4.2
기 본 경 비	1,774	1,774	1,910	136	7.7
인 력 운 영 비	648,430	648,430	676,514	28,084	4.3

## II. 검토의견

- 서울특별시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은 2016년도 최종예산대비 7.8%, 2조 1,487억원이 증가한 29조 6,525억원으로 편성하고 있으나, 재정 여건은 자치구 및 교육청 지원 증가, 복지 확대 및 자치구 교부금 등 의무지출은 늘어나 전년도 보다 다소 어려운 재정운용 여건이 될 것으로 보여짐.

### 1. 2017년도 경기전망

- 서울시는 기획재정부와 같이 세계 교역량 증가 등 경기 회복세가 이어져 내년도에 3.0%의 경제성장률을 전망하고 있음.
  - 기획재정부는 3.0%의 경제성장률을 전망하고 있으나, 한국개발연구원과 한국은행은 이보다 낮은 2.7%와 2.9%로 전망하고 있음.
  - IMF와 OECD도 각각 2.9%와 3.0%의 경제성장률을 전망하고 있으나, LG경제연구원은 정부의 3%대 성장률과 달리 2.3%의 경제성장률을 전망하고 있음.<sup>1)</sup>
  - 대외적으로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완만한 경기 회복에 따라 경제성장률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나, 영국의 EU탈퇴,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들의 성장률 둔화에 따른 불확실성 내재와 대내적으로 가계부채 증가, 해운업·조선업 구조조정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사드배치 결정에 따른 중국관광객 감소, 김영란법 시행 등 경기전망과 관련한 변수들이 올해에 비해 내년도에도 크게 나아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1) LG경제연구원이외에도 현대경제연구원(2.3%), 한국금융연구원(2.5%), 한국경제연구원(2.2) 등 2%대의 경제성장률을 전망하고 있음.



## [2017년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전망]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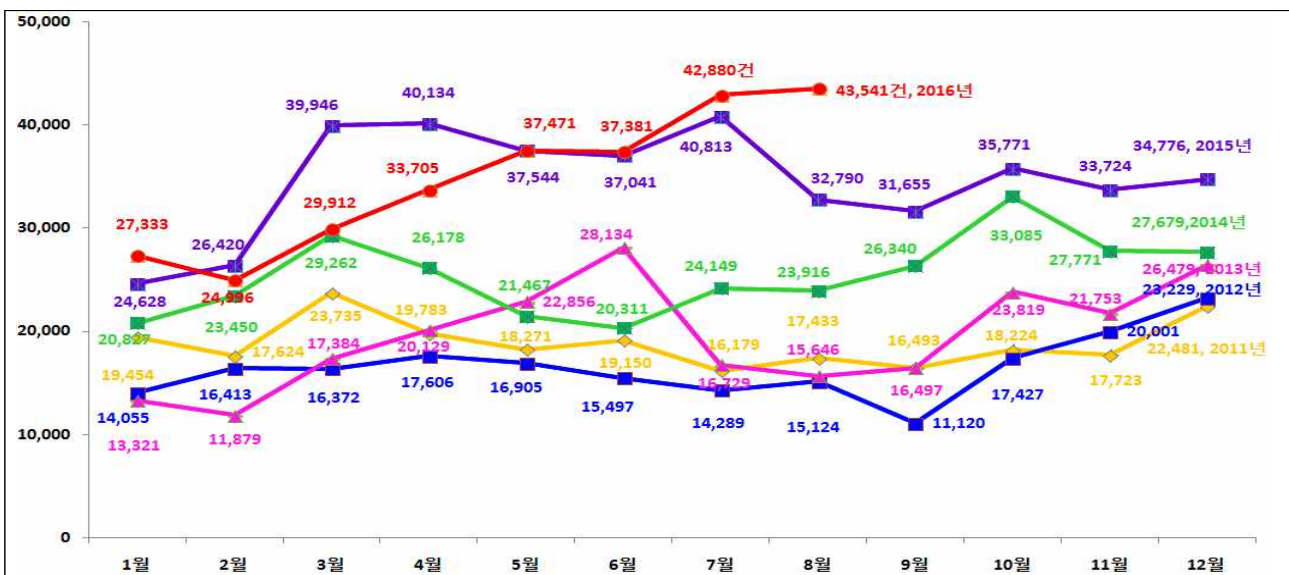
구 분	정 부	K D I	한국은행	L G 경 제 연 구 소	I M F	O E C D
2016년	2.8	2.6	2.7	2.5	2.7	2.7
2017년	3.0	2.7	2.9	2.3	2.9	3.0

※ 경기전망 수치는 2016. 11. 20까지 발표된 자료임.

- 아울러, 지방세수입과 관련되는 주택시장 동향을 보면, 저금리 기조의 유지 및 전세가격 상승에 의한 실수요자 매매 전환 수요 유지 등으로 금년도에 부동산 거래가 대폭 증가하였으나, 내년도에는 부동산 3법 개정('14.12월)에 따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유예('17.12월)종료 이전 강남 및 강북권 노후 아파트 재건축 추진 증가로 2016년 거래 추가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나, 하반기에는 미국 금리인상 요인,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긍정적인 요인을 미쳤던 DTI(총부채 상황비율)·LTV(담보인정 비율) 규제완화의 종료 등으로 부동산 시장에 부정적인 요인이 더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 최근 5년간 부동산거래 현황 ]

(단위 : 건)



## ■ 최근5년 부동산 거래 동향

(단위 : 건)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1년	월계	19,454	17,624	23,735	19,783	18,271	19,150	16,179	17,433	16,493	18,224	17,723	22,481
	누계	19,454	37,078	60,813	80,596	98,867	118,017	134,196	151,629	168,122	186,346	204,069	226,550
'12년	월계	14,055	16,413	16,372	17,606	16,905	15,497	14,289	15,124	11,120	17,427	20,001	23,229
	누계	14,055	30,468	46,840	64,446	81,351	96,848	111,137	126,261	137,381	154,808	174,809	198,038
'13년	월계	13,321	11,879	17,384	20,129	22,856	28,134	16,729	15,646	16,497	23,819	21,753	26,479
	누계	13,321	25,200	42,584	62,713	85,569	113,703	130,432	146,078	162,575	186,394	208,147	234,626
'14년	월계	20,827	23,450	29,262	26,178	21,467	20,311	24,149	23,916	26,340	33,085	27,771	27,679
	누계	20,827	44,277	73,539	99,717	121,184	141,495	165,644	189,560	215,900	248,985	276,756	304,435
'15년	월계	24,628	26,420	39,946	40,134	37,544	37,041	40,813	32,790	31,655	35,771	33,724	34,776
	누계	24,628	51,048	90,994	131,128	168,672	205,713	246,526	279,316	310,971	346,742	380,466	415,242
'16년	월계	27,333	24,996	29,912	33,705	37,471	37,381	42,880	43,541				
	누계	27,333	52,329	82,241	115,946	153,417	190,798	233,678	277,219				

## 2. 세입예산 검토

○ 2017년도 재무국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도(14조 8,240억 4천 4백만원) 대비 8.9% 증가된 16조 1,483억 8천 1백만원임.

- 주요 증가세입은 기준시가 및 공시지가 등 과표상승에 의해 1,385억원이 증가한 '재산세', 경제성장에 따른 개인 및 법인 실적 증가 및 명목임금 상승에 따른 세입증가 전망에 의해 986억원이 증가한 '지방소득세', 담배소비세 인상(641원→1,007원)효과 및 2016년 대비 담배판매량 증가에 의해 1,345억원이 증가한 '담배소비세', 부가가치세 정부예산 증가와 물가 상승에 의해 1,055억원이 증가한 '지방소비세',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 등 본세 세입 증가에 의해 1,619억원이 증가한 '지방교육세' 등이며,
- 주요 감소 세입은 경마 등 레저인구 감소에 따른 '레저세' △26억원 감액, 사유 일반재산 임대료 감소에 따른 '공유재산임대료' △38억원 감액, 공유재산매각수입금 매각 감소에 따른 '재산매각수입' △986억원 감액 등임.

### 보 통 세

전년대비 10% 증가된 13조 7,535억 1천 7백만원의 보통세 세입을 계상하고 있으며, 일반회계세입의 85.1%(전년도 65.2%)를 차지하고 있음.

### ■ 취득세

- 부동산 및 차량의 취득과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관련 등기·등록시 부과되는 세입으로 시세 총 세입액의 21.3%(전년도 26.4%)를 차지하고 있음.
- 취득세는 부동산분 3조 4,060억 2천 2백만원, 차량분 6,010억 3천 2백만원 등 총 4조 70억 5천 4백만원(전년 대비 8.3% 감소)으로 추계하고 있으며,

2) 전년도 대비 증감은 전년도 전망예산액(4조 3,716억 4천 3백만원)과 비교한 증감 표시임.

- “부동산분”의 경우 ‘16년 부과전망액 기준으로 주택·건물·토지 등 과세유형별 점유비와 거래신장률, 과세대상별 과표신장률을 적용하여 추계하였고,
  - “차량분”의 경우 2016년 부과전망액 기준으로 2012년~2013년 리스차량 특수요인을 제외한 2014년이후 3년평균 자동차등록대수 신장률(100.84%)과 징수율(99.62%)을 반영하여 추계하고 있음.
- 2017년도 취득세의 추계는 부동산경기침체를 반영한 거래신장률(주택 84.54%, 건물 93.23%, 토지 92.72%)을 적용한 것 인바, 이는 내년도 부동산 거래 감소를 감안한 다소 보수적인 세입 추계라고 할 것임.

## ■ 취득세 추계 반영지표

### <부동산>

- 과세대상별 점유비(직전년도 점유비 반영)
  - 주택 53.96%, 건물 14.66%, 토지 31.38%
  - ※ 2014.1.1.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취득세 영구인하 반영
- 거래신장률(부동산경기 침체 반영)
  - 주택 84.54%, 건물 93.23%, 토지 92.72%
  - ※ 주택·건물·토지 유형별 2017년과 2012년 정부정책 반영

연 도	주요 정부 정책 내용
2012년	DTI 부활('11.4월), LTV 규제 비은행 확대 유지('12.12월), 분양가 상한제 폐지 논의, 재건축 초과이익 2년 유예 논의, 임대주택 의무비율 완화 등
2017년	DTI·LTV 완화 종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유예 종료, 저금리 기조 등

- 과표 신장률 : 주택(98.87%), 건물(102.14%), 토지(101.15%)
  - (주택) 주택가격 포함세를 감안 최근 3년평균 서울시 주택매매가격 종합지수 증감률
  - [건물]  $m^2$ 당 기준과표 인상률(부동산 경기침체가 반영된 최근 5년 평균  $1m^2$  건물기준시가 증감률 반영)
  - [토지] 부동산 경기침체가 장기화 되고 있어 최근 5년 평균 서울시지가변동률

### <차량>

- 자동차등록대수증감률(100.84%) : 2012~2013년 리스차량 특수요인 발생(자동차등록대수 감소)연도는 제외하고, 2014년 이후 3년평균 자동차 등록대수 신장률을 반영하여 추계

## ■ '17년 취득세 추계 산출식

### < 부동산 >

- [ ('16년 부과전망액) × 과세대상별 점유비 × 거래신장률 × 과표신장률 ]  
× 징수율(최근 3년평균) = '17년 추계액

### < 차 량 >

- [ ('16년 부과전망액) × 자동차등록대수 신장률 × 징수율(최근 3년 평균)  
= '17년 추계액

## ▶ 취득세 세입추계(A+B) : 4,007,054백만원

### 산 출 내 역

#### ○ 부동산 추계액(A) : 3,406,022백만원

- '16년 부과전망 : 3,774,720백만원

- 주택 : '16년 부과액 × 주택점유비 × 거래신장률  
× 과표신장률 = 2017년 부과 추계액  
< 3,774,720백만원 × 53.96% × 84.54% × 98.87%  
= 1,756,899백만원
- 건물 : '16년 부과액 × 건물점유비 × 거래신장률  
× 과표신장률 = 2017년 부과 추계액  
< 3,774,720백만원 × 14.66% × 93.23% × 102.14%  
= 526,796백만원
- 토지 : '16년 부과액 × 토지점유비 × 토지거래신장률 × 과표신장률  
= 2017년 부과 추계액  
< 3,774,720백만원 × 31.38% × 92.72% × 101.15%  
= 1,122,327백만원

**'17년 추계액** : 3,406,022백만원

'16년 부과전망액 × 최고·최저제외 3년평균 징수율 = '16년 추계액  
(3,774,720백만원 × 98.74%) = 3,406,022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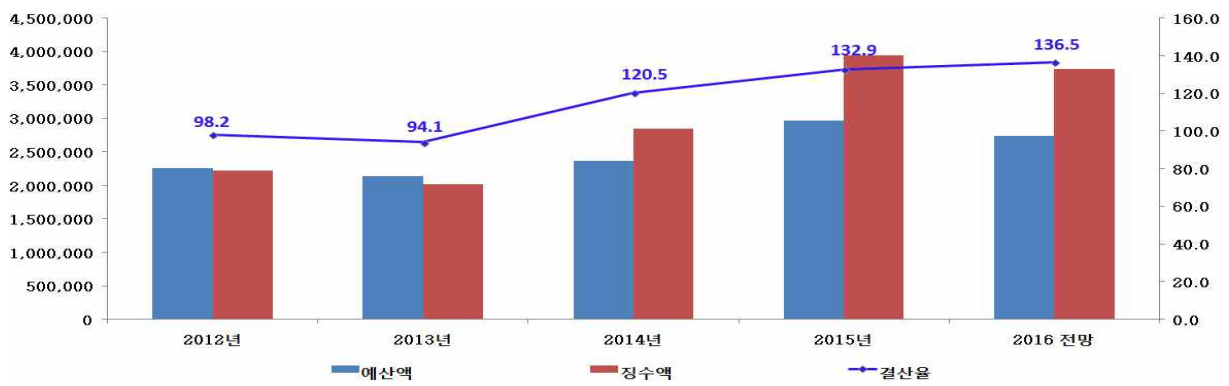
#### ○ 차량 추계액(B) : 601,032백만원

'16년 부과전망 × 차량등록대수신장률 × 최근 3년평균 징수율  
= '17년 추계액  
598,299백만원 × 100.84% × 99.62%  
= 601,032백만원

### ◇ 최근 5년간 결산현황 및 세입전망(부동산)

(단위 : 백만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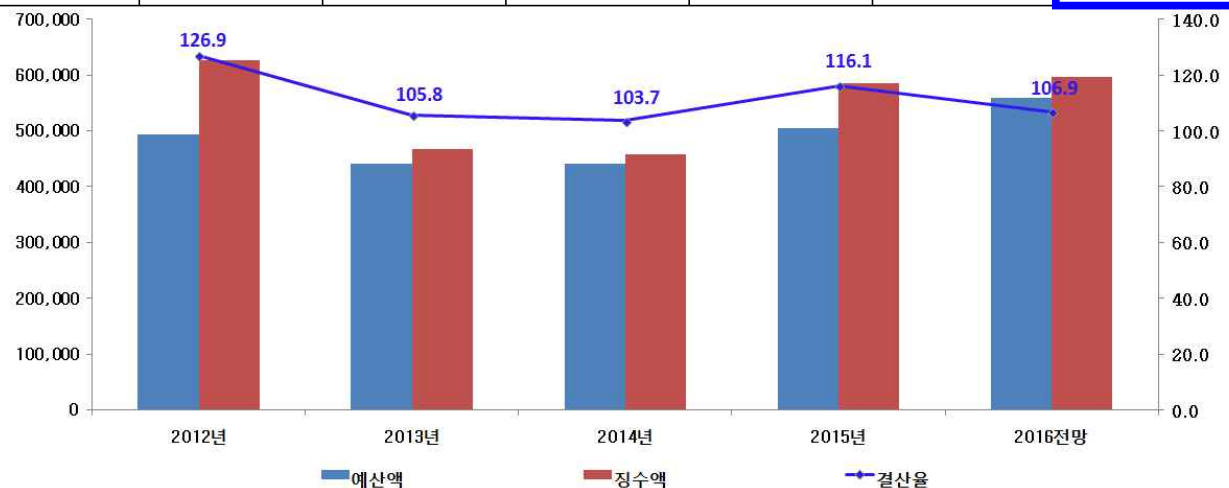
연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16 전망	'17 추계
예산액	2,257,606	2,139,875	2,367,329	2,996,662	2,743,833	<b>3,406,022</b>
징수액	2,216,910	2,013,467	2,853,151	3,941,660	3,744,720	
결산율	98.2	94.1	120.5	132.9	136.5	



### ◇ 최근 5년간 결산현황 및 세입전망(차량)

(단위 : 백만원, %)

연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16 전망	'17 추계
예산액	493,183	442,077	441,875	504,258	558,319	<b>601,032</b>
징수액	625,913	467,627	458,022	585,665	596,923	
결산율	126.9	105.8	103.7	116.1	106.9	



## ■ 주민세

- 주민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로서, 시세 총 세입액의 2.9%를 차지하는 4,788억 3백만원(전년도 예산대비 13.8% 증가)으로 추계하고 있음.
- “균등분”은 매년 일정한 추세로 증가하고 있는 안정적 세목으로 개인세대주·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를 구분하고 과세대상별 2016년 부과전망액을 기준으로 세대수·사업자수 신장률과 징수율을 반영하여 478억원으로 추계하고,
- “재산분”의 경우는 사업장 연면적(330㎡ 초과)을 기준으로 과세되는 세목임을 감안하여 사업자수 증감률을 적용하여 226억원으로 추계하고 있으며,
- “종업원분”의 경우는 종업원과 급여를 기준으로 과세되는 세목임을 감안하여 취업자수 증감율과 임금상승율을 반영하고 3년간 징수율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2017년도 예상경제성장률(103.0%)을 반영하여 4,081억원으로 추계하고 있음.

### ◇ 최근 3년 개인세대수, 개인 및 법인사업자 현황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예상
세 대 수	4,194,176	4,189,948	4,193,712	<b>4,197,486</b>
개 인 사 업 자	373,264	395,061	403,082	<b>416,303</b>
법 인 사 업 자	221,371	253,034	258,730	<b>278,264</b>

- 2016년도 주민세는 종합적으로 균등분·재산분·종업원분 주민세 모두 사업자 수 증가, 임금상승 등을 반영하여 추계한 것으로 세수 규모는

매년 소폭 증가 추세라 할 수 있으나, 종업원분 추계시 내년도 정부의 경제성장률 전망수치인 3.0% 수치를 적용함에 따라 다소 보수적으로 추계 및 편성한 것으로 판단됨.

▶ **주민세 세입추계(A + B + C) : 478,803백만원**

◇ **2017년 주민세 세입추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추계액	산 출 내 역
<b>균등분(A)</b>	<b>47,994</b>	
- 개 인 (세대주)	(15,059)	◦ 2016년 부과전망 × 주민등록세대수 신장률 × 징수율 = (18,644백만원) × (100.09%) × (80.70%) = 15,059백만원
- 개인사업자	(18,509)	◦ 2016년 부과전망 × 개인사업자수 신장률 × 징수율 (20,152백만원) × (103.28%) × (88.93%) = 18,509백만원
- 법인사업자	(14,426)	◦ 2016년 부과전망 × 법인사업자수 신장률 × 징수율 = 추계액 (16,257백만원) × (107.55%) × (82.15%) = 14,426백만원
<b>재산분(B)</b>	<b>22,661</b>	◦ 2016년 부과전망 × 사업자수 증감률 × 징수율 = 추계액 (21,591백만원) × (103.48%) × (96.85%) = 21,661백만원
<b>종업원분(C)</b>	<b>408,148</b>	◦ 2016년 부과전망 × 2017년 예상경제성장률 × 징수율 = 추계액 (396,674백만원) × (100.26%) × (99.89%) = 408,148백만원

◇ **최근 5년간 결산현황 및 세입전망**

(단위 : 백만원, %)

연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16 전망	' 17 추계
예산액	364,278	398,500	396,029	404,019	420,847	<b>478,803</b>
징수액	364,014	377,789	389,360	409,767	464,591	
결산율	99.9	94.8	98.3	101.4	110.4	



## 지방소득세

- 지방소득세(소득세분, 법인세분, 특별징수분)는 국세인 소득세 및 법인세와 연동되어 부과되는 세입으로, 시세 총 세입액의 26.1%인 4조 2,297억 6천 7백만원(전년도 예산대비 2.4% 증가)으로 추계하고 있음.
- 지방소득세는 시세 세입 중 가장 비중이 큰 세목으로, 소득세분의 경우 내년도 부동산의 완만한 거래와 경기성장에 따른 개인사업자 소득 증가 등을 감안할 때 내년도에는 1조 243억원이 징수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 법인세분의 경우는 전년도 법인소득에 대해 다음연도에 확정 신고하는 세목으로 '16년 경제성장 등을 감안할 때 금년도 전망액(1조 3,526억원)보다 8.9% 증가한 1조 5,416억원으로 추계하고 있음.
- 특별징수분의 경우, 당해연도 소득 및 급여에서 원천징수 되는 세목으로 경제성장에 따른 임금상승, 취업자 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법인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의 타 시·도 환급액 발생으로 2016년 전망액보다 감소한 1조 6,637억원으로 추계하고 있음.

### ◇ 2017년 자치단체간 정산결과 서울시 세입 증감 예상액

- 지방소득세 법인소득분 : 132,472백만원 정산 예상(법인소득분 증가요인)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 152,321백만원 정산 예상(특별징수분 감소요인)

- 지방소득세의 경우, 2016년도 지방소득세(3조 9,415억원)는 당초예산(3조 7,476억원)보다 2,687억원이 늘어난 금액이 징수될 것으로 전망되는 바, 내년도의 완만한 경기성장률을 고려할 경우 지방소득세는 다소 보수적으로 편성된 것으로 보임.
- 이는 2016년 세입예산과 관련하여 국회예산정책처는 경기적 요인으로 세입여건이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과대 편성된 세입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한 무리한 징세행정이 경기위축을 심화시킬 수 있어 집행부가 다소 보수적이고 소극적으로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세입예산의 추계는 실질적인 세입규모를 정확히 추산하는 것이 중요할 것인바, 보다 실질적이고 정확한 세입추계를 위한 집행부의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여짐.
- 아울러 지방소득세는 재산세와 더불어 대표적인 누진세율 체계를 갖고 있어 지방세로서의 특성을 살리지 못하고 있는 바, 집행부는 단일 세율 체계로의 전환을 위한 법령개정 건의 등 보다 체계적인 세입관리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망된다 하겠음.

#### ◇ 지방소득세 서울시 점유비 적용 현황

##### ① 종합소득분

- '17년 종합소득세 예산안을 기준 최근 5년 평균 서울시 점유비 적용
  - ▶ '17년 정부 종합소득세 예산(14조 4,179억원), 점유비(42.87%)

##### ② 양도소득분

- '17년 양도소득세 예산안을 기준 최근 5년 중 최고·최저제외 3년 평균 서울시 점유비 적용
  - ▶ '17년 정부 양도소득세 예산(10조 6,939억원), 점유비(37.99%)

##### ③ 법인소득분

- '17년 법인세 예산안 기준 최근 3년 평균 서울시 점유비 적용
  - ▶ '17년 정부 법인세 예산(53조 9,726억원), 점유비(26.11%)

##### ④ 특별징수분 : '17년 취업자수 증감을 및 임금상승을 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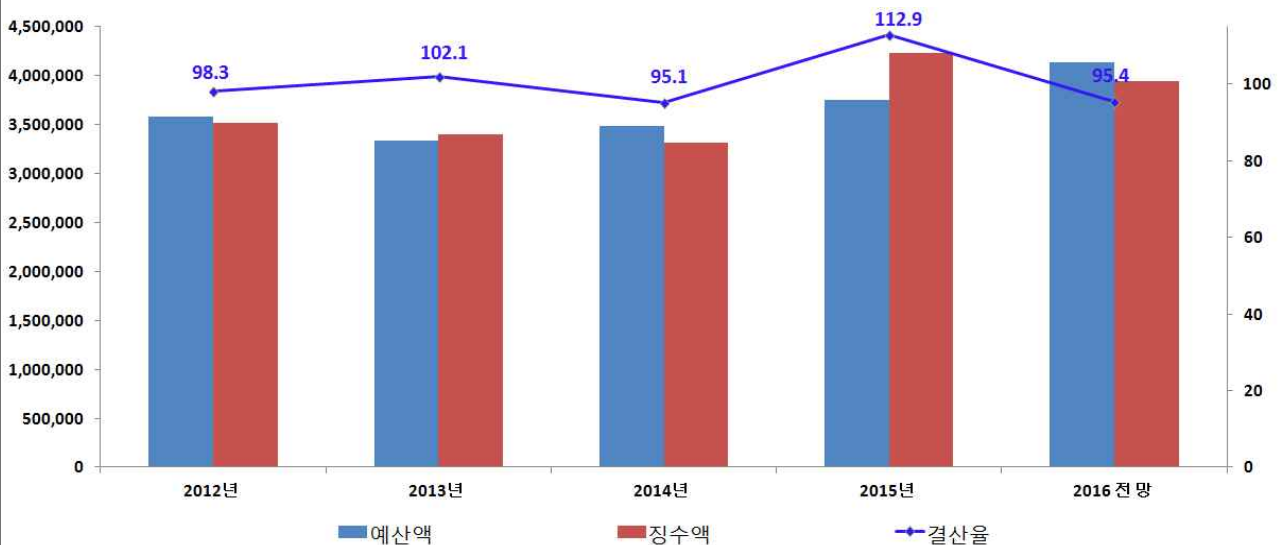
- '17년 원천징수분 예산안을 기준 최근 3년 평균 서울시 점유비 적용
  - ▶ '17년 정부 원천징수분 예산(40조 1,600억원), 점유비(45.22%)

▶ 지방소득세 세입추계(A+B+C+D) : 4조 2,297억 6천 7백만원

구분	추계액	산출내역
A:종합소득세분	(618,095)	'16년 국세예산안 × 지방세 비율 × 우리시점유비 = '17년 추계액 14조 4,179억원 × 10% × 42.87% = 618,095백만원
B:양도소득세분	(406,261)	'16년 국세예산안 × 지방세 비율 × 우리시점유비 = '17년 추계액 10조 6,939억원 × 10% × 37.99% = 406,261백만원
C:법인세분	(1,541,697)	('16년 국세예산안 × 지방세 비율 × 우리시점유비) + 세액공제·감면 증수분 = '17년 추계액 (53조 9,726억원 × 10% × 26.11%) + 280,522백만원 = 1,541,697백만원
D:특별징수	(1,663,714)	'16년 국세예산안 × 지방세 비율 × 우리시점유비 = '17년 추계액 40조 1,600억원 × 10% × 45.22% = 1,663,714백만원

◇ 최근 5년간 결산현황 및 세입전망 (단위 : 백만원, %)

연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16 전망	'17 추계
예산액	3,578,977	3,333,597	3,482,178	3,747,613	4,131,153	<b>4,229,767</b>
징수액	3,517,305	3,404,824	3,310,020	4,230,996	3,941,517	
결산율	98.3	102.1	95.1	112.9	95.4	



■ 지방소비세

- 정부의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2010년부터 신설된 세목으로, 국세인 부가가치세를 기준으로 정부의 2017년도 부가가치세 예산편성액에 지방소비세 비율(11%) 및 서울시 안분비율을(행정자치부 배부기준 기존 5%분 14.0759%, 취득세안분관련 6%분 22.6876%) 적용하여 산정한 바, 2017년도 지방소비세는 1조 559억 3천 1백만원(전년도 당초예산 9,504억 2천 8백만원 대비 11.1% 증가)으로 추계하고 있음.
- 지방소비세는 본세인 부가가치세가 민간소비와 밀접하게 관련된 세목인 바, 경기변동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할 것임. 이에 정부의 소비활성화 추진정책(코리아 그랜드 세일 지속 추진), 물가상승, 경제성장 영향력을 감안하여 내년도 세입전망은 금년도 결산전망액(1조 255억원) 보다 소폭 증가가 예상된다고 하겠음.
- 지방소비세의 재원이 되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2017년도 세입 전망치를 보면, 정부(기획재정부)는 61조 5,353억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3조 4,428억원(5.9%)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sup>3)</sup> 이는 민간소비 증가 전망<sup>4)</sup>과 2016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제도<sup>5)</sup>에 따른 세법개정효과로 인한 것이라 하겠음.
- 서울시는 정부의 부가가치세 전망치를 기준으로 지방소비세가 전년 대비 11.1%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해운업 및 조선업 구조 조정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 관광객 감소로 국내

3) 2017년도 기획재정부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국회기획재정위원회) 22쪽.

4) 2017년 민간소비 증가율 전망 : 2.1%

5) 사업자간에 철스크랩(고철)을 거래하는 경우, 매입자가 대금을 매출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지정 금융회사의 매출자 전용계좌에 입금하면, 철스크랩 가액은 매출자에게 지급되고 부가가치세는 지정 금융회사에서 따로 관리하여 국고에 납입하는 제도로, 철스크랩 시장에서 그간 무자료 거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부가가치세 탈루가 빈번하여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임.

소비 감소 가능성 내재, 국내 정치적 불안 요소에 따른 기업들의 투자 위축 등을 고려하면, 서울시의 2017년도 지방소비세 세입은 과대하게 추계된 것이라 사료됨. 따라서 지방소비세의 직접 세입예산 편성을 위해서는 국내외의 세입감소 요인을 정확하게 반영·추계하려는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기존 지방소비세 : 5%

- '10.1.1 지방세법 개정으로 신설된 세목으로 국세인 부가가치세를 과세표준으로 5%를 적용하여 계산
  - 특별징수의무자(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는 징수한 지방소비세를 다음달 20일까지 납입관리자에게 납입
  - 납입관리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지사) : 서울특별시
  - 납입관리자는 납입된 지방소비세를 대통령이 정하는 안분기준에 따라 납입 받은 날부터 5일이내에 각 도지사에게 납입
- 우리시 지방소비세 안분비율 : 14.0759%
  - ※ 민간최종소비지출 : 657,275,899백만원(가중치 적용시 1,120,770,983백만원)
- 안분방법 : 전국 지방소비세(5%) × 우리시 안분비율 = 우리시 지방소비세 세입

### 취득세 인하 관련 감소분 보전 : 6%

- '13.12.26 지방세법 개정으로 취득세 인하 감면 보전분으로 국세인 부가가치세를 과세표준으로 6%를 적용하여 계산
  - 특별징수의무자와 납입관리자의 업무처리 내용은 위의 기존 5%의 지방소비세율과 동일
- 우리시 지방소비세 안분비율 : 22.6876%
  - ※ 안분기준 : 우리시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 감소분 합계액 / 전국 주택 유상거래별 취득세 감소분 합계액
- 안분방법 : [전국 지방소비세(6%) - {지방교부세비율(19.24%) + 지방교육청교부금비율(20.27%)}] × 우리시 안분비율 = 우리시 지방소비세 세입

▣ '17년 추계액(A + B) : 1,055,931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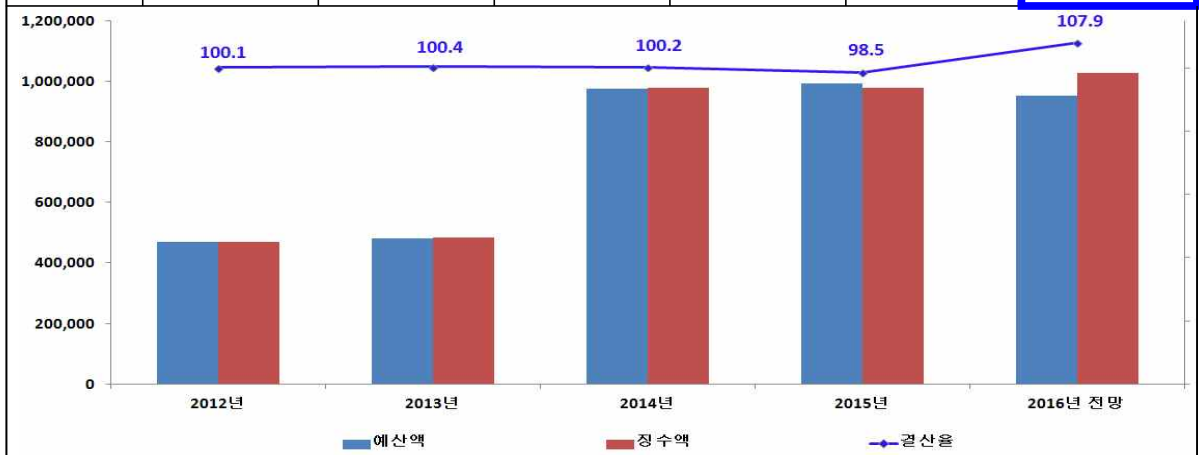
산 출 내 역

- A : 기존 5% 추계액 = 전국 지방소비세 비율(5%) × 우리시 점유비  
= 2017년 지방소비세(기존 5%분) 추계액  
3조 4,570억원 × 14.0759% = 486,609백만원
- B : 취득세 감면보전분 6% 추계액 = 취득세 감면관련 지방소비세 인상율(6%)  
- [지방교부세 비율(19.24%) + 교육청교부금(20.27%)] ×  
우리시 전국대비 점유비율 = 2017년 취득세 감면보전분  
추계액  
4조 1,484억원 - (7,981억원 + 8,408억원) × 22.6876%  
= 569,322백만원

◇ 최근5년 예산 및 결산액 현황

(단위 : 백만원, %)

연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16 전망	'17 추계
예산액	469,260	480,918	975,594	993,159	950,428	<b>1,055,931</b>
징수액	469,755	482,908	977,587	977,789	1,025,578	
결산율	100.1	100.4	100.2	98.5	107.9	



## ■ 자동차세

- 자동차세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등록자동차 소유주(소유분 자동차세)와 휘발유,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주행분 자동차세)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1조 545억 4천 1백만원(전년도 예산대비 1.5% 증가)으로 추계하고 있음.
- 차량등록대수 증감률과 연도별 세입이 매년 비슷한 추이를 유지하고 있어, 2016년 부과 전망액을 기준으로 자동차등록대수 신장률과 징수율을 반영하고, 승용차요일제 참여 차량 자동차세 감면 금액은 2013년 이후 감소추세이며, 2017년 이후 승용차 요일제 감면제도 폐지로 세입은 소폭증가 할 것으로 예상되나, 승용차 요일제 금액은 크지 않고 미미함에 따라 내년도 추계에는 반영하지 않고 있음.

### ◇ 최근 5년 자동차 등록대수 현황

(단위 : 대, %)

구 분	' 16.6월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등록대수	<b>3,079,041</b>	3,045,442	3,013,541	2,973,877	2,969,184	2,995,251
증 감 율	<b>101.10</b>	101.6	101.33	100.16	99.13	100.46

- 자동차세 보전분의 경우는 전국 자동차세 보전액(9,830억원)을 기준으로 우리시 2016년 상반기 안분비율을 적용하여 추계하고 있음.

### ◇ 자동차세 보전분 안분비율 현황

(단위 : %)

구 분	'16년		'15년		'14년		'13년		'12년		'11년		'10년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안분율	16.99	-	17.24	16.99	17.58	17.24	18.17	17.58	18.72	18.17	20.07	18.79	22.17	20.07

- 유가(운수업체) 보전분의 경우는 2015년 유가보조금 안분비율이 큰 폭으로 조정되고 있었고, 내년도 영업용 차량 증가 등을 감안하여 2017년도 추계는

택시·화물·버스 유가보조금 세출예산을 반영하여 추계하고 있음.

◇ 유가 보전분 안분비율 현황

(단위 : %)

구분	'16년	'15년		'14년	'13년	'12년	'11년	'10년	'09년	'08년	
		2월	9월							12월	2월
안분율	12.88	12.72	12.69	10.59	14.97	13.34	10.97	7.21	10.02	13.71	14.03
증감비	1.3	0.2	19.9	-29.3	12.2	21.6	52.1	-28.0	26.9	-2.3	-13.4

▶ 자동차세 추계(A+B) : 1조 545억 4천 1백만원

◇ 소유분 자동차세(A) : 5,626억 7천 5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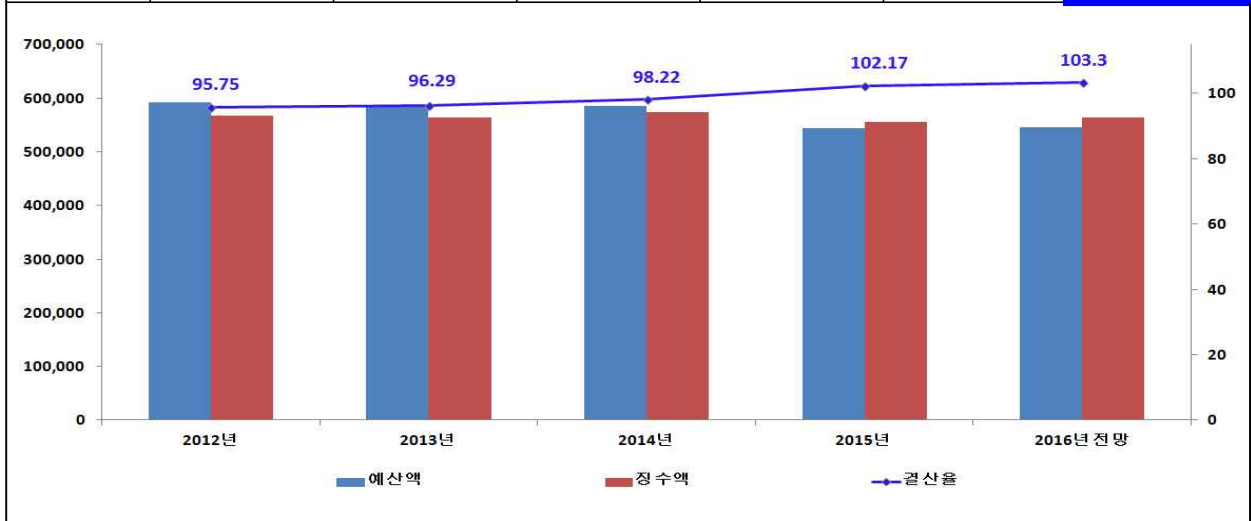
산 출 내 역

◦ '16년도 부과전망 × 자동차등록대수신장률 × 징수율 = '17년 추계액  
 1,105,522백만원 × 100.21% × 85.24% = 562,675백만원

[ 최근5년 예산 및 결산액 현황 ]

(단위 : 백만원, %)

연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16 전망	'17 추계
예산액	591,854	585,987	584,803	543,727	545,488	<b>562,675</b>
징수액	566,721	564,255	574,413	555,510	563,189	
결산율	95.8	96.3	98.2	102.2	103.3	





◇ **주행분 자동차세(B) : 4,918억 6천 6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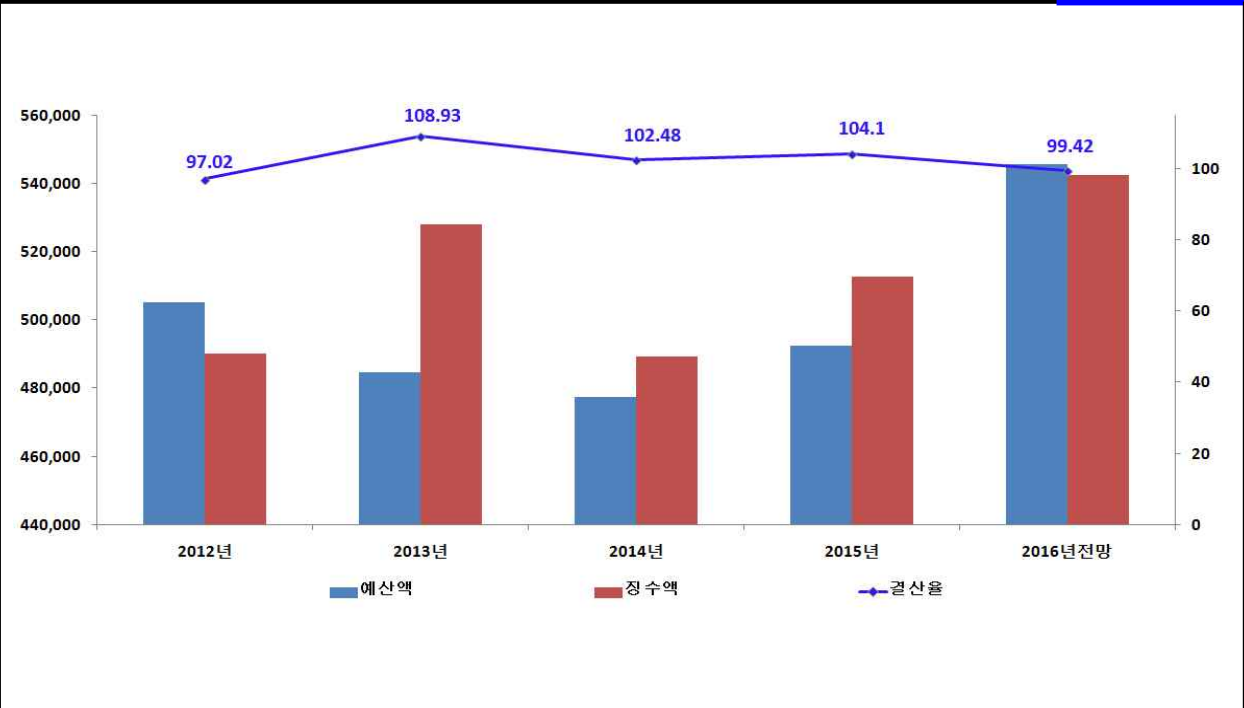
**산 출 내 역**

- 자동차세 보전분 = 169,047백만원
  - 전국자동차세보전분 × 우리시안분비율 = '17년 추계액  
(983,000백만원 × 16.993474% = 167,047백만원)
- 유가(운수업체) 보조금 지원분 = 324,819백만원
  - '16년 유가보조금 세출예산(택시·화물+버스) × 교통·에너지·환경세 신장율 = '17년 추계액  
(319,912백만원 + 9,400백만원 × 101.534% = 324,819백만원)

◇ **연도별 주행분 현황**

(단위 : 백만원, %)

연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16 전망	' 17 추계
예산액	505,161	484,671	477,269	492,530	545,488	<b>491,866</b>
징수액	490,127	527,938	489,114	512,723	542,333	
결산율	97.0	108.9	102.5	104.1	99.4	



## ■ 레저세

- 레저세는 경마, 경륜, 경정 등의 투표권발매금 총액을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하는 세금으로, 1,267억 6천 8백만원(전년도 예산대비 2.1% 감소)으로 추계하고 있음.
- 레저세는 레저활동 인구 증가 등으로 세입 증가 추세인 세목이었으나, 사행성 산업 위축 및 레저활동 다양화, 성동구('12년 경마)와 송파구('14년, 경정, 경륜)장외발매소 사업장 폐업으로 인해 세입은 감소세로 전환되었음.
- 내년도는 실내경마장 신설에 따른 민원 발생 등으로 세입 증대에 한계가 있으나, 장외발매소 폐업 등 특수요인이 없음에 따라 '16년 부과 전망액을 기준으로 과세대상별로 구분한 다음 최근 5년 최고·최저제외 3년평균 유형별 세액신장률을 적용 추계하고 있음.

◇ 레저세(A + B + C) : 1,267억 6천 8백만원

산 출 내 역	
○ 경마(A) :	( '16년도 부과전망 × 세액신장률 ) × 징수율 ( 77,332백만원 × 98.57% ) × 100.0% = 76,226백만원
○ 경륜(B) :	( '16년도 부과전망 × 세액신장률 ) × 징수율 ( 37,344백만원 × 100.91% ) × 100.0% = 37,664백만원
○ 경정(C) :	( '16년도 부과전망 × 세액신장률 ) × 징수율 ( 13,486백만원 × 95.34% ) × 100.0% = 12,858백만원

### ◇ 최근 5년 예산 및 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

연 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16 전망	' 17 추계
예산액	173,498	177,356	174,795	147,366	129,457	<b>126,768</b>
징수액	158,804	155,207	149,691	133,449	128,162	
결산율	91.5	87.5	85.6	90.6	99.0	



## ■ 담배소비세

- 담배소비세는 제조담배 또는 수입담배 등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세금으로, 6,342억 5천 5백만원(전년도 예산대비 26.9% 증가)으로 추계하고 있음.
- 2010년 이후 경기회복 및 웰빙문화 확산과 건강에 대한 관심고조와 함께 음식점 등 금연구역 지정이 확대됨에 따라 성인흡연율은 감소하고 있음.

### ◇ 흡연율 및 담배판매량 현황

(단위 : %, 천갑)

구 분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2010년
흡 연 율	22.60	24.20	24.10	25.80	27.00	27.50
담배판매량	538,546	846,044	818,231	847,264	870,201	881,789

※ 흡연율 자료출처 : 보건복지데이터포털

담배판매량 : 담배소비세 징수액 ÷ 갑당 담배소비세액으로 추정하여 계산된 값

- 2015년 담배소비세 인상(641원→1,007원) 이후, 담배판매량이 감소하였으나, 최근 금연실패 등으로 판매량 및 세입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담배가격 인상에 따른 사재기 등 특수요인이 발생한 2014년~2016년 판매량을 제외한 최근 3년간 평균 증감율과 흡연증감율을 적용한 것인 바, 2017년 세입은 다소 보수적으로 편성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 담배판매량 증감 현황

(단위 : 천갑, %)

구 분	' 16년 전망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담배판매량	<b>618,820</b>	538,546	846,044	818,231	847,264	870,201
증 감 율	<b>114.91</b>	63.65	103.4	96.57	97.36	98.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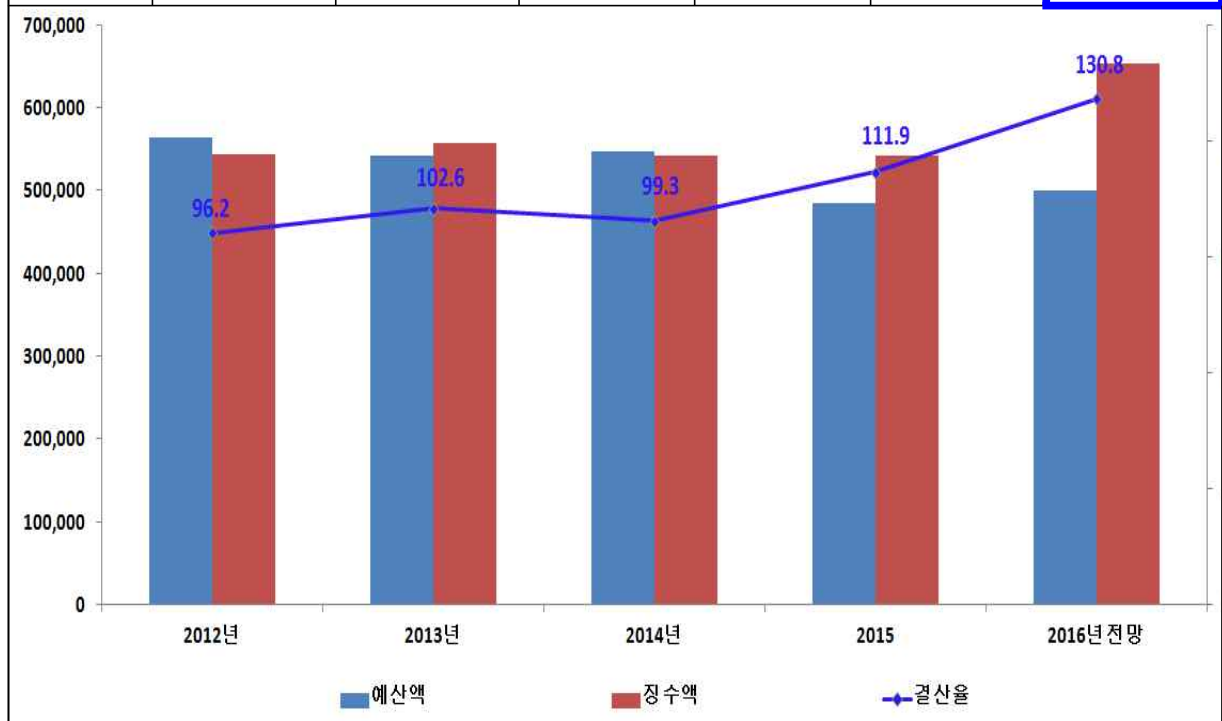
◇ 담배소비세 추계 : 6,342억 5천 5백만원

산 출 내 역	
○ ('16년도 부과전망액 × 최근3년평균 담배판매량 증감률) × 흡연증감율 = '17년 추계액 (654,453백만원 × 97.54%) × 99.51% = 634,255백만원	

◇ 최근 5년간 결산현황 및 세입전망

(단위 : 백만원, %)

연 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16 전망	' 17 추계
예산액	564,402	542,257	546,333	484,436	499,676	<b>634,255</b>
징수액	543,096	556,417	542,314	542,316	653,453	-
결산율	96.2	102.6	99.3	111.9	130.8	-



## ■ 재산세

- 재산세는 자치구 자원불균형 해소를 위해 구세인 재산세의 일정비율을 공동세로 징수하여 자치구에 균등배분하기 위해 2007년 7월 신설된 특별시분 재산세와 도시계획구역내의 토지·건축물 또는 주택 소유자로서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에게 부과하는 도시지역분 재산세로, 총 2조 1,663억 9천 8백만원(전년 예산 대비 6.8% 증가)으로 추계하고 있음.
  - “특별시분 재산세”는 2016년도 25개 자치구 재산세 추계액(선박 및 항공기 제외)을 합산하여 2017년 특별시분 재산세 세입 비율(50%)을 적용하여 9,947억 3천 5백만원(전년 예산 대비 6.4% 증가)을 계상하고 있으며,
  - “도시지역분 재산세”는 부동산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기준시가 및 개별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과표상승으로 소폭 증가될 것으로 보고, 과세 대상별 과표증감률 등을 감안하여 1조 1,716억 6천 3백만원(전년 예산 대비 7.2% 증가)을 계상하고 있음.

### ◇ 최근 5년간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률 현황 (단위 : %)

구 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주택	평균	<b>5.35</b>	3.35	1.60	1.91	3.31	-0.69
	단독	<b>4.51</b>	2.40	4.09	2.99	6.32	0.67
	공동	<b>6.20</b>	4.30	-0.90	-6.80	-0.30	-2.10
건물	<b>1.54</b>	1.56	3.23	1.64	5.17	7.41	
토지	<b>4.08</b>	4.47	3.35	2.86	3.69	1.31	

- 세입예산의 추계는 그 형식의 중요성 보다는 실질적인 세입규모 추산의 정확성이 더욱 중요하다 할 것인바, 보다 정확한 세입 추계를 위한 집행부의 다각적인 연구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재산세 추계(A+B) : **2조 1,663억 9천 8백만원**

◇ 특별시분재산세(A) : 9,947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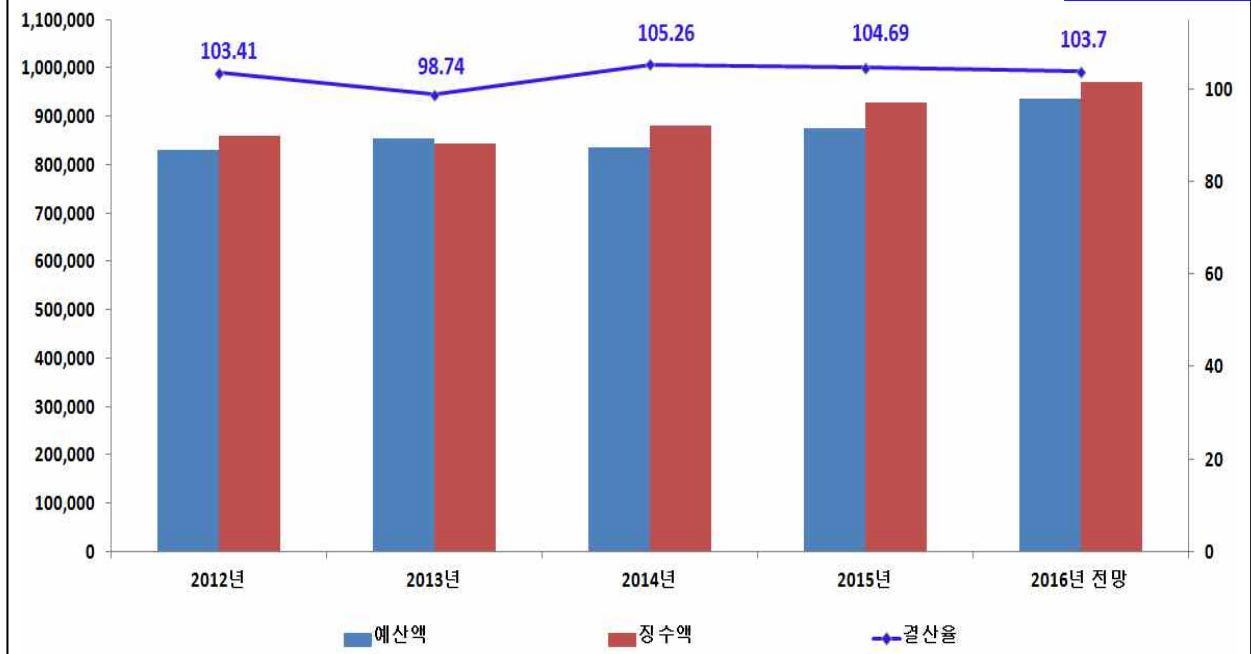
산 출 내 역

○ '17년 자치구 재산세 추계액 × '17년 특별시분재산세 세입비율 = '17년 추계액  
 1,989,470백만원 × 50.00% = 994,735백만원

[최근5년 예산 및 결산액 현황]

(단위 : 백만원, %)

연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16 전망	' 17 추계
예산액	830,375	853,200	835,475	875,250	934,700	<b>994,735</b>
징수액	858,657	842,454	879,455	927,503	969,272	
결산율	103.4	98.7	105.3	104.7	10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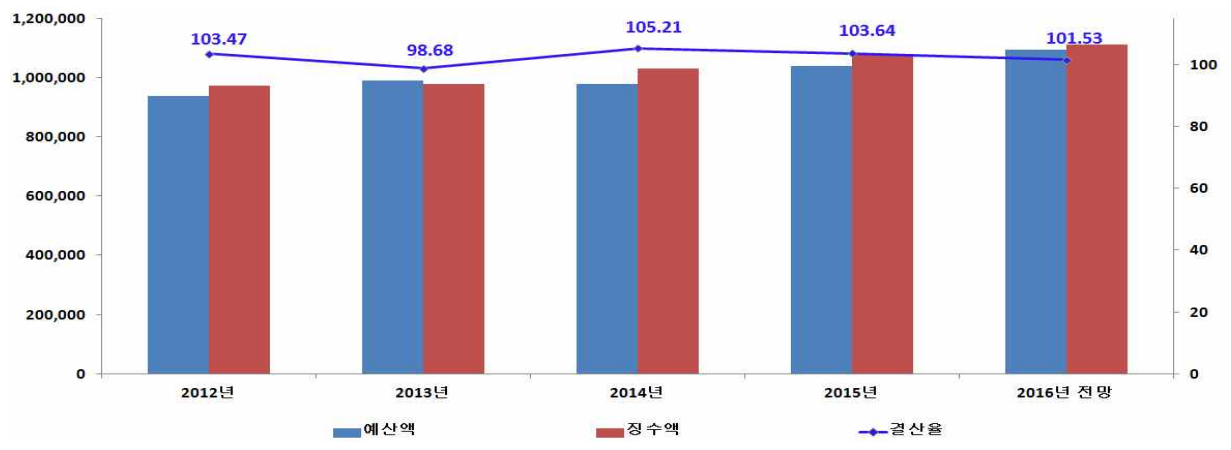
◇ 도시지역분 재산세(B) : 1조 1,716억 6천 3백만원

산 출 내 역	
○ 주 택(A) : 공동주택(B) + 개별주택(C) = 2017년 추계액	554,559백만원 + 81,137백만원 = 635,696백만원
▶ 공동주택(B) : ('16년도 부과전망 × 공동주택 점유비 × 공시가격 증감률 주택수증감률 × 주택가격 변동률) × 징수율	(602,280백만원 × 86.37% × 105.25% × 102.74% × 100.59%) × 98.01% = 554,559백만원
▶ 개별주택(C) : ('16년도 부과전망 × 개별주택점유비 × 공시가격 증감률 주택수증감률 × 주택가격 변동률) × 징수율	(577,485백만원 × 13.63% × 103.46% × 96.90% × 100.59%) × 98.01% = 81,137백만원
○ 토 지(D) : ('19년도 부과전망 × 공시지가증감률) × 징수율	(433,122백만원 × 103.97%) × 96.62% = 435,096백만원
○ 전 물(E) : ('16년도 부과전망 × 기준가액 증감률) × 징수율	(101,306백만원 × 103.97%) × 96.62% = 100,871백만원

◇ 최근 5년간 결산현황 및 세입전망

(단위 : 백만원, %)

연 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16 전망	' 17 추계
예산액	938,610	989,913	978,710	1,039,661	1,093,174	<b>1,171,663</b>
징수액	971,205	976,890	1,029,739	1,077,532	1,109,882	
결산율	103.5	98.7	105.2	103.6	101.5	



◇ 2017년도 공동재산세 전출금 예산액 : 총 1,021,552백만원



○ 2017년 현년도분 공동재산세 각 구별 추계액 : 994,735백만원

(단위 : 천원)

구분	2017년 자치구 재산세 추계				특별시분 재산세
	주택	건물	토지	계	
계	793,605,008	187,222,561	1,008,642,549	1,989,470,118	994,735,064
종로구	12,889,062	8,407,652	54,753,719	76,050,433	38,025,217
중구	9,049,181	13,767,937	87,817,773	110,634,891	55,317,446
용산구	40,924,113	4,831,485	37,490,746	83,246,344	41,623,172
성동구	22,416,520	4,664,800	22,949,640	50,030,960	25,015,480
광진구	21,382,885	4,273,201	21,574,571	47,230,657	23,615,329
동대문구	15,900,861	5,143,680	21,259,808	42,304,349	21,152,175
중랑구	12,534,739	2,855,345	12,815,644	28,205,728	14,102,864
성북구	24,784,049	3,550,173	15,028,980	43,363,202	21,681,601
강북구	9,964,376	2,424,039	11,742,537	24,130,952	12,065,476
도봉구	13,144,000	2,024,000	8,516,000	23,684,000	11,842,000
노원구	23,777,068	3,451,767	13,741,821	40,970,656	20,485,328
은평구	19,401,504	3,031,177	16,466,369	38,899,050	19,449,525
서대문구	17,889,944	3,505,856	16,668,354	38,064,154	19,032,077
마포구	31,648,204	9,698,920	35,224,765	76,571,889	38,285,945
양천구	35,343,791	4,789,891	17,286,439	57,420,121	28,710,061
강서구	27,244,540	8,144,148	39,257,437	74,646,125	37,323,063
구로구	17,112,348	7,333,133	20,661,898	45,107,379	22,553,690
금천구	7,771,416	7,146,918	17,833,518	32,751,852	16,375,926
영등포구	26,506,000	14,224,000	47,882,000	88,612,000	44,306,000
동작구	25,046,000	3,424,000	18,072,000	46,542,000	23,271,000
관악구	17,387,753	5,300,026	20,079,667	42,767,446	21,383,723
서초구	102,753,287	15,426,351	103,895,085	222,074,723	111,037,362
강남구	143,208,620	30,502,930	227,219,470	400,931,020	200,465,510
송파구	84,842,975	14,048,070	86,521,415	185,412,460	92,706,230
강동구	30,681,772	5,253,062	33,882,893	69,817,727	34,908,864

○ 2017년 체납분 공동재산세 추계액 : 15,793백만원

- 체납예상액(38,691백만원) × 체납징수율(28.78%) + 특수요인 징수전망액(4,658백만원)  
= 15,793백만원

○ 2015년도 결산 정산분 : 11,024백만원

## 목적세

목적세는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가 있는 바, 전년대비 12.1% 증가된 1조 5,685억 6천 2백만원의 세입을 계상하고 있으며, 일반회계 세입의 9.7%(전년도 7.3%)를 차지하고 있음.

### ■ 지역자원시설세

-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개발과 주민편익시설 확충을 위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자연자원을 활용하는 자나 자원을 개발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목적세로 특정자원분과 특정부동산분으로 구분되며, 총 2,589억 8천 5백만원(전년 예산 대비 2.8%)으로 추계하고 있음.
  - “특정자원분”은 지하수와 화력발전이 과세대상으로 지하수는 기타용수에 해당하는 지하수에 과세되며 상하수도의 사용 증가에 따라 지하수 사용량은 매년 감소추세에 있으며, 화력발전은 도심지에 위치(마포, 송파)하고 있으나 가동율은 낮아 3억5천4백만원으로 계상하고 있음.

#### ※ 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분) 세율 요약

- 과세대상 :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컨테이너, 원자력발전, 화력발전
- 지하수 세율 : 음용수(1m<sup>3</sup> 당 200원), 온천수(1m<sup>3</sup> 당 100원), 기타(1m<sup>3</sup> 당 20원)
- 화력발전 : 발전량 kWh 당 0.3원

- “특정부동산분”은 지역자원시설세(특정부동산분)의 부과대상이 되는 주택, 건물의 공시가격이 매년 상승 추세에 따라 세입은 증가하여 총 2,586억 3천 1백만원으로 계상하고 있으며, ‘16년 부과 전망액을 기준으로 주택, 건물 등 유형별 과표에 영향을 미치는 증감율을 반영하여 추계한 것임.

◇ 최근 5년간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률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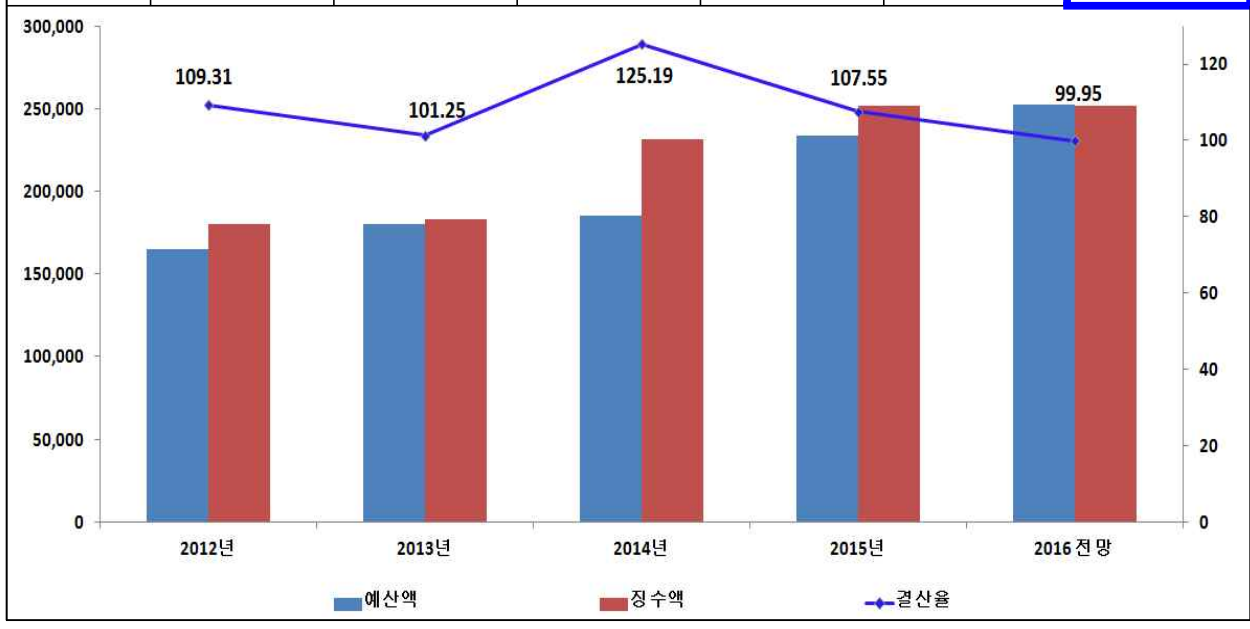
(단위 : %)

구 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주 택	평균	<b>5.35</b>	3.35	1.60	1.91	3.31	-0.69
	단 독	<b>4.51</b>	2.40	4.09	2.99	6.32	0.67
	공 동	<b>6.20</b>	4.30	-0.90	-6.80	-0.30	-2.10
건 물		<b>1.54</b>	1.56	3.23	1.64	5.17	7.41

◇ 최근 5년간 결산현황 및 세입전망

(단위 : 백만원, %)

연 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16 전망	' 17 추계
예 산 액	164,717	180,497	185,046	233,714	252,023	<b>258,985</b>
징 수 액	180,051	182,746	231,655	251,361	251,891	
결 산 율	109.3	101.2	125.2	107.6	9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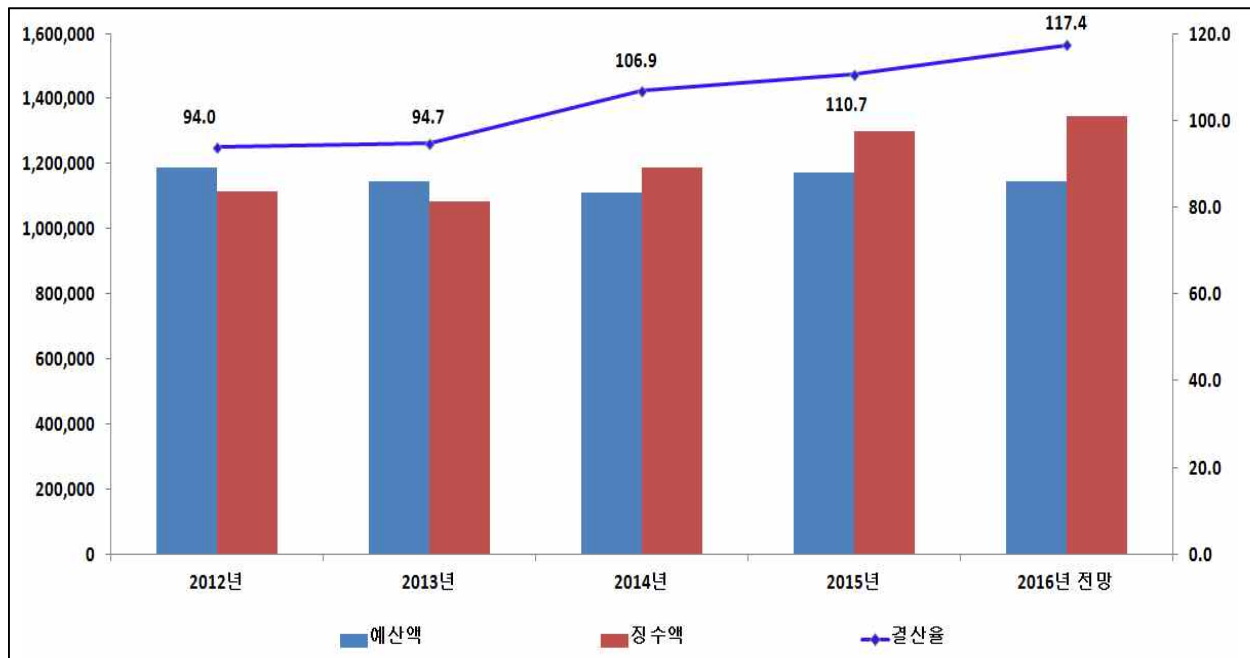
## ■ 지방교육세

- 지방교육세는 등록분취득세(20%), 재산세(20%), 담배소비세(43.99%), 레저세(40%), 균등분주민세(25%), 승용자동차세(30%), 등록분면허세(20%) 등의 지방세에 부가하여 과세되는 목적세(전액 교육청으로 전출)로, 1조 3,095억 7천 7백만원(전년 예산대비 14.1% 증가)으로 추계하였음.

### ◇ 최근 5년간 결산현황 및 세입전망

(단위 : 백만원, %)

연 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16 전망	' 17 추계
예산액	1,186,867	1,145,895	1,111,703	1,172,546	1,147,581	<b>1,309,577</b>
징수액	1,115,751	1,085,510	1,187,905	1,298,199	1,347,771	
결산율	94.0	94.7	106.9	110.7	117.4	



## 지난연도 시세

- 해당연도 출납정리기간 내에 납입되지 못한 세입을 다음연도 이후 납부일이 속하는 연도의 세입에 편입하는 것으로, 2017년도 지난년도 시세의 경우는 2,332억 9천 7백만원(전년 대비 3.6% 증가)으로 편성하는 등 체납징수노력 등에 의거 매년 증가 추세를 유지하고 있음.
- 사회지도층 체납자 특별관리, 가택수색 등을 통한 재산은닉자 추적활동, 신규체납자의 신속한 체납처분 등으로 매년 징수규모는 일정한 추세이나 신규체납 증가에 따라 체납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음.

### ※ 체납징수율 변화 추이

'06년(19.59%) → '07년(18.83%) → '08년(19.72%) → '09년(22.18%)  
→ '10년(20.08%) → '11년(18.24%) → '12년(16.58%) → '13년(15.70%)  
→ '14년(13.80%) → '15년(14.08%)

- 집행부는 38세금징수와 신설 이후 지속적으로 체납활동 전개를 통해 징수가능한 세입은 상당부분 징수하고, 대부분은 징수가 어려운 체납분이며, 체납자 재산은닉, 고액체납자의 납세의식 부족 등으로 세입 징수 여건이 악화되었다고 하고 있으나,
  - 2017년도 지난년도시세 예산편성이 체계적인 기법에 의한 추계가 아닌 목표달성이나 이에 따른 체납징수포상금을 염두에 둔 과소한 목표설정에 기인한 것이 아닌지에 대한 검토가 요망된다 하겠으며,
  - 향후 체납 규모 측면을 감안한 지난년도 각 세목에 대한 요소별,

사안별 특수사항을 반영한 추계기법의 개발 및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으며, 2009년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지난년도 시세 체납징수를 제고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과 함께 재무국내 세무 3과가 공동으로 징수하는 방안이나 자치구의 체납징수를 제고를 위한 협력모델 구축 및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인센티브제도에 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2016년말 지난연도 체납 예상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계	취득세	주민세	지 방 소득세	자동차세	재산세 (특별시분)	재산세 (도시지역)	지역자원 시 설 세	지 방 교육세
연말체납 (A-B-C)	873,943	67,994	13,485	604,546	80,948	35,560	28,309	5,662	37,439
연초체납 (A)	1,293,327	97,664	16,611	863,390	138,372	54,988	47,202	9,655	65,445
징수전망 (B)	170,160	15,421	2,084	51,803	47,171	17,201	13,002	2,606	20,872
결손전망 (C)	249,224	14,249	1,042	207,041	10,253	2,227	5,891	1,387	7,134

※ 징수전망액 및 결손전망액은 세목별 최근3년 평균 징수율 및 직전 2년 결손율 반영

◇ 세목별 징수율 및 결손율 현황

(단위 : %)

구 분	취득세	주민세	지 방 소득세	자동차세	재산세 (특별시분)	재산세 (도시지역)	지역자원 시 설 세	지 방 교육세
징 수 율	15.79	13.50	6.00	42.27	32.08	29.17	29.10	39.42
결 손 율	14.59	6.27	23.98	7.41	4.05	12.48	14.37	10.90

◇ 지난년도 시세 추계 : 2,332억 9천 7백만원

산 출 서 식

◦ ('17년 세목별 총체납 예상액 × 직전년도 세목별 징수율)  
+ 특수요인 = '17년 추계액

◇ 2017년 지난년도 시세 세목별 추계액 산출내역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7년 예상 체납현황			2017년 추계현황			
		지난연도 체납(A)	신규발생 체납(B)	총체납 (C=A+B)	징수율 (D)	징수액 (E=C×D)	특수요인 (F)	추계액 (E+F)
합	계	873,943	368,640	1,242,583	14.52	180,449	52,848	<b>233,297</b>
취	득	67,994	42,909	110,903	12.76	14,151	780	<b>14,931</b>
주	민	13,485	8,582	22,067	5.06	1,117	1,063	<b>2,180</b>
지	방	604,546	154,253	758,799	5.96	45,224	2,796	<b>48,020</b>
자	동	80,948	85,181	166,129	40.45	67,199	33,307	<b>100,506</b>
특	별	35,560	3,131	38,691	28.78	11,135	4,658	<b>15,793</b>
재	산	28,309	26,826	55,135	15.06	8,303	4,659	<b>12,962</b>
지	역	5,662	5,675	11,337	28.41	3,221	642	<b>3,863</b>
지	방	37,439	42,083	79,522	37.85	30,099	4,943	<b>35,042</b>

◇ 최근5년 예산 및 결산액 현황 (단위 : 백만원, %)

연 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16 전망	' 17 추계
예 산 액	186,482	176,213	178,481	182,489	225,248	<b>233,297</b>
징 수 액	165,811	187,983	177,187	179,681	230,556	
결 산 율	88.9	106.7	99.3	98.5	102.4	

## 세외수입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수수료수입, 이자수입, 재산매각수입, 기타수입(시·도반환금수입, 시금고출연금) 등으로 일반회계 세입의 3.67%(전년도 3.64%)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6년도 최종예산 6,982억 7천 1백만원 대비 15.1% 감소된 5,930억 5백만원으로 계상하였음.

### ■ 공유재산임대료

- 공유재산임대료는 최근 3년간 평균 일반징수 임대료 수입에 2016년도 자가상승률을 반영하여 108억 4천 9백만원을 계상하고 있음.
- 공유재산임대료 수입이 대폭 감소하게 된 것은 2016년 관리분부터 운전면허시험장의 관리권이 자치구에서 SH공사로 변경됨에 따라 민간위탁에 따른 임대수입(자치구 위임관리비용 : 대부료의 50%, SH 위탁수수료 : 대부료의 10%)의 증가와 출납폐쇄기간 변경(익년 2월말 → 당해 12월말)에 따른 징수액 증가 등의 요인을 반영하여 추계한 것임.
  - ※ '16년도 시유재산 임대수입 중 운전면허시험장 임대수입이 출납폐쇄기한 변동으로 인해 '15.12월(31억원)과 '16.1월(49억원) 세입 조치되었고, '16.12월에 '17년도 관리분(83억원) 세입 예정으로 일시적으로 증가 하였으나, '17년부터 정상 세입 처리 예정임.
- 공유재산임대료 중 자치구 위임재산의 경우 보다 적극적인 협의와 직접관리 방안을 비롯한 중장기적인 세입증대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공유재산임대료 추계 : 133억 3백만원

산 출 내 역

○ 특별징수 : 운전면허시험장 대부 징수(대부료-위탁수수료)율  
= 13,303백만원(4,937백만원 + 8,366백만원)

(단위 : 백만원)

징수월	면허시험장	대부료	비고
'15.12월 ( '16년 관리분 1차)	강서, 강남, 서부(일부) 도봉(일부)	3,101	'15년 예산
'16.1월 ( '16년 관리분 2차)	서부, 도봉	4,937	'16년 예산
'16.12월 ( '17년 관리분 전체)	서부, 강서, 도봉, 강남	8,366	
'17.12월 ( '18년 관리분 전체)	서부, 강서, 도봉, 강남	8,707	'17년 예산

◇ 연도별 공유재산임대료 징수 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전망	2017년 추계
예산액	3,631	14,850	11,162	6,105	6,220	14,721
부과액	5,795	6,047	6,304	4,874	16,570	-
징수액	5,741	6,022	6,281	4,855	16,500	-
일반징수	1,821	2,096	2,077	1,754	3,197	-
특별징수	3,920 (면허시험장)	3,926 (면허시험장)	4,204 (면허시험장)	3,101 (면허시험장)	13,303 (면허시험장)	-
징수율(%)	99.06%	99.57%	99.63%	99.60%	99.50%	-

## ■ 공금예금이자수입

○ 공금예금이자수입은 일반회계 여유자금 운용 이자수입으로,

- 공금예금 이자수입의 경우는 최근 5년간 일반회계 평잔 중 최고 (2012년 1,117,954백만원), 최저(2011년 801,053백만원)를 제외한 3개년 평균액을 2017년 평잔액으로 추정하고, 2016년 6월 기준 공금예금 금리 및 자금유동성을 고려하여 2016년도 예산대비 14.8% 증액된 209억 1천 2백만원을 계상하였음.

※ '16년 6월기준 예금금리 : 공금예금 1.85%

※ 기준금리(COFIX) : 2010년 2월 16일 도입된 “주택담보대출 기준금리”로 은행연합회가 시중은행의 자금조달 금리를 취합한 뒤, 은행별 조달잔액을 참작해 가중 평균 금리를 구하는 방식으로 산출

- 그러나, 추계 적용 금리 시점(2016년 6월) 이후 금리에 많은 변화는 없으나, 최근 미국의 금리인상(2016년 12월 예정) 움직임과 2016년도 적용되는 금리산정 방식이 시중 금리에 보다 민감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변경되었다는 측면 등을 고려하여 2017년도에 추가적인 금리등락 현상이 나타날 경우에 대비한 적절한 세입조정 등을 위한 노력이 요망된다 하겠음.

◇ 공금예금이자수입 추계 : 217억 6천 8백만원

기 간	2015년 이자수입(예산액)	2015년 이자수입(결산)	공금예금 이율(%)
계	19,678,000	21,768,660	1.85

## ■ 시유재산매각수입

- 시유재산매각수입의 경우는 일반매각분(최근 5년간 정수액 산술평균)

추계액과 특별매각분 추계액을 감안하여 5,118억 7천 5백만원(2016년도 예산 대비 - 15.8%, 1,043억 6천 감소)으로 편성하였음.

### ◇ 2017년 세입추계

#### ② 2017년 추계액 및 산출내역(상세한 내용 기재)

- 2017년 추계액 : 511,875,190천원
- 산출내역
  - 일반징수(45,765,777천원) + 특별징수(466,109,413천원)
  - 일반징수 : 최근 5년간('12~'16) 일반징수 평균액(43,971,730천원)×104.08%(‘17년도 자가상승률)
  - 특별징수 : 서울의료원 매각 분납대금(437,600,000천원,2년 분납), 원자동 추모공원 부지 보상(22,000,000천원, 4년 분납), SH공사 고덕강일지구 손실보상(6,509,413천원)

- 2016년도 시유재산매각수입에는 서울의료원 매각수입이 포함되어 있는 바, 이는 정부의 복지 확대에 의한 급격한 재정지출 증가 등에 따른 재정부족이 예상됨에 따라 비상재정대책의 일환으로 향후 추진될 영동권역 종합발전계획(2015년 6월)과 연계하여 민간 활용을 위해 서울의료원 강남분원을 매각하고자 하는 것이나,
  - 서울의료원은 매각재산 예정가격이 9,725억원으로 지난 8월 25일과 9월 25일에 걸친 공개매각에 연이어 실패함에 따라, 올해 시유재산 매각 수입은 2016년도 당초예산 6,104억원 대비 165억원만이 징수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바, 2014년 이후 해마다 세입확보에 막대한 차질을 초래해 오고 있음.
  - 따라서 2017년도 실적 세입확보 가능규모에 대한 검토와 함께 경기상황에 따라 적정 매수자가 없을 경우 막대한 세수결손이 예상되는 바, 이에 대비한 세입조정 등 재무관리측면에서의 적정한 예방조치 및 사후관리 방안 등에 대한 대책마련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연도별 시유재산 매각수입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전망
부과액	85,401,768	74,663,868	90,062,701	51,759,619	64,339,515	145,274,128
징수액	79,157,950	73,915,792	89,475,831	51,293,379	61,247,131	143,988,170
일반징수	39,930,891	39,717,714	46,299,595	45,374,811	45,168,275	40,388,170
특별징수	39,227,059 (SH공사보상 등)	34,198,078 (SH공사보상 등)	43,176,236 (SH공사보상 등)	5,918,568 (SH공사보상 등)	16,078,856 (SH공사보상 등)	103,600,000 (SH공사보상 등)
징수율(%)	92.7%	98.9%	99.3%	99.1%	95.19%	97.03%

◇ 향후 4년간 징수전망

(단위 : 천원)

2018		2019		2020		2021	
전망액	산출기준 (주요변동내역)	전망액	산출기준 (주요변동내역)	전망액	산출기준 (주요변동내역)	전망액	산출기준 (주요변동내역)
62,033,021	2016년 공시지가 변동률 및 특별 매각원지등 반영	63,976,448	2016년 공시지가 변동률 및 특별 매각원지등 반영	65,999,160	2016년 공시지가 변동률 및 특별 매각원지등 반영	68,204,406	2016년 공시지가 변동률 및 특별 매각원지등 반영

### 3. 세출예산 검토

재무국 소관 2017년 세출예산은 2조 1,641억 7백만원으로 2016년도 당초예산 2조 557억 8천 3백만원 대비 5.3% 증액된 수준이며, 201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감안한 최종예산 2조 2,340억 2천 8백만원 대비 3.1%가 감액된 수준임.

#### 가. 물품구매 및 재무관리 효율화

- 공통 소요 행정물품의 수급관리를 통해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지원하고, 반납물품 처분 및 재활용 등 물품관리를 위해 자재창고를 운영하는 것으로 전년 대비 2백만원을 증액하여 14억 7천 9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 세출 예산 내역 〉

(단위 : 천원)

구 분	2015년 예산액	2016예산액 (A)	2017예산(안) (B)	증감 (B-A)	
					(B-A)*100/A
계	885,025	1,476,630	<b>1,478,502</b>	1,872	
사무관리비	98,430	103,660	<b>99,300</b>	△4,360	△4
공공운영비	840	840	<b>672</b>	△168	△20
국외업무여비	20,000	40,000	<b>40,000</b>	-	-
시책추진업무 추진비	20,400	20,400	<b>18,000</b>	△2,400	△11
특정업무경비	66,000	76,200	<b>69,000</b>	△7,200	△9
연금지급금		600,000	<b>636,000</b>	36,000	6
자산및물품취득비	679,355	635,530	<b>615,530</b>	△20,000	△3

- ‘국외업무여비’는 2015년 대비 100% 증가한 4천만원을 편성하였음. 인사 혁신처에서는 공무원들의 공무 국외출장 관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외여행관련 지침’을 마련하는 등 불필요한 공무원의 국외출장을 방지하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한 지침이 취해졌는바, 국외업무여비는 유사한 방문은 지양하고 지방재정 효율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국외출장인지 여부 등 출장의 타당성이 확보된 후에 증액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6)

※ 재무국은 2016년 국외업무여비집행과 관련하여 총5회에 3천5백만원을 집행하고 있음.

### 공무국외여행 심사 및 허가기준

구 분	내 용
여행의 필요성	- 국외여행 이외의 수단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거나 중요도가 낮은 여행을 억제하고 국익에 직접적인 효과를 초래할 수 있는 여행을 우선허가
	- 여행목적에 맞는 세부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며, 동일 또는 유사 목적의 여행은 가능한 한 이를 통합·단일화

#### ◇ 국외업무여비 예산 집행현황

(단위:천원,%)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액	집행액 (11.28기준)	집행률
물품구매 및 재무관리 효율화	국외업무여비	40,000	34,457	86.1

6) 인사혁신처, 공무국외여행 관련 복무관리 강화 지침

## 나. 공유재산 관리 및 운영

- 시유재산 매각·교환 추진을 위한 재산수입 증대, 주요재산의 취득·처분 심의 및 재산업무 담당 공무원 간 업무연찬회 등을 통한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22억 9천) 대비 33.6% 증액한 15억 3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 세출 예산 내역 〉

(단위 : 천원)

구 분	2015년 예산액	2016예산액 (A)	2017예산(안) (B)	증감 (B-A)	
					(B-A)*100/A
계	1,713,711	2,290,275	<b>1,503,485</b>	△786,790	△34
사무관리비	830,528	1,420,346	<b>605,748</b>	△814,598	△57
공공운영비	831,183	857,929	<b>886,937</b>	29,008	3
시책추진업무 추진비	12,000	12,000	<b>10,800</b>	△1,200	△10
연구용역비	40,000				

- ‘사무관리비’(전년대비 8억 1천만원 감액한 6억 5백만원)는 감정평가수수료(1억 7천만원), 공유재산심의회 운영(7백만원), 공유재산담당자 연찬회(8백만원), 재산관리수수료(4억 2천만원) 등으로 편성하고 있음.

### 〈 사무관리비 세부 산출내역 〉

과목구분	세부 산출내역	
사무관리비	○ 감정평가수수료	= 170,000천원
	○ 공유재산심의회 운영	= 7,350천원
	○ 공유재산담당자 연찬회	= 8,398천원
	○ 재산관리 수수료(측량비 등)	= 420,000천원
공공운영비		

과목구분	세부 산출내역		
	○ 재산화재 및 가스배상 책임보험료 806,306천원*1.1*1회	=	886,937천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국공유재산관리 특별업무 추진 등	=	10,800천원

○ 최근 5년간 감정평가수수료 집행내역을 보면, 2015년에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매각에 따른 감정평가 수수료(6억 6천 3백만원) 등으로 해당 예산의 지출이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으며, 2016년에도 서울의료원 재매각을 위하여 감정평가수수료(6억 6천 3백만원)를 재차 편성한 바 있음.

※ 2017년에는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감정평가수수료는 제외되었음.

○ 이와 관련하여, 당초 2015년에 매각하기로 하였던 서울의료원 강남분원이 두 차례 공개입찰에도 불구하고 매각에 실패함에 따라, 관련 감정평가 수수료가 매물비용으로 사라진 것으로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례라 할 것인 바, 감정평가수수료 집행과 관련한 집행부의 책임있는 해명과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최근 5년간 감정평가수수료 집행내역 〉

(단위 : 천원)

연 도	2011	2012	2013	2014	2015 (10. 30.기준)
수수료	63,316	70,649	133,262	108,327	779,298



## 라. 계약심사 업무추진

- 발주부서에서 심사 요청한 사업비에 대한 적절한 원가산출을 위한 ‘원가조정거버넌스’ 및 계약심사담당 워크숍 개최 등의 업무추진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7천 6백만원) 대비 17% 감액된 6천2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sup>7)</sup>

### 〈 세출 예산 내역 〉

(단위 : 천원)

구 분	2015년 예산액	2016예산액 (A)	2017예산(안) (B)	증감 (B-A)	
					(B-A)*100/A
계	46,100	75,900	<b>62,350</b>	△13,550	△17
사무관리비	30,000	59,800	<b>47,950</b>	△11,850	△19
시책추진업무 추진비	16,100	16,100	<b>14,400</b>	△1,700	△10

- ‘사무관리비’는 원가조정거버넌스 운영 수당(1천 7백만원), 원가조정거버넌스 운영 경비(3백만원), 계약심사담당워크숍(1천4백만원)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년 대비 19% 감액한 4천 8백만을 편성하였음.

### 〈 사무관리비 세부 산출내역 〉

사무관리비	○ 원가조정거버넌스 운영(참석수당) 150,000*7명*17회	=	17,850천원
	○ 원가조정거버넌스 운영(전문가 수당) 100,000*7명*17회	=	11,900천원
	○ 원가조정거버넌스 운영(운영경비) 200,000*17회	=	3,400천원
	○ 계약심사담당 워크숍 개최 14,800,000원*1회	=	14,800천원

- 2016년 원가조정거버넌스회의 결과를 보면, 연간 9회의 회의를

7) ‘원가조정거버넌스’는 계약업체·협회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계약원가심사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자문회의로 「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의2 제1항에서 규정된 ‘원가분석자문회의’를 말하는 것임.

개최하고, 예산 절감액이 336억 1천 6백만원(7.7%)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전년도 17회, 1,588억원). 그러나 2017년 계획을 보면, 회의는 17회 개최에 참석자도 7명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등 예년에 비해 과도한 회의개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바, 내실있는 회의 운영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집행부의 책임있는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최근 3년간 원가분석자문회의 운영실적 및 예산절감액 〉

(단위 : 백만원)

연도	회의개최	안건수	자 문 결 과			
			심사요청액	심사액	절감액	절감률
계	37	220	2,279,879	2,085,053	194,826	8.5%
2016.11.	9	71	438,988	405,372	33,616	7.7%
2015	17	131	1,817,259	1,658,462	158,797	8.7%
2014	11	18	23,632	21,219	2,413	10.2%

〈서울특별시 계약심의회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조례〉

- 제12조의2(원가분석자문회의) ① 제2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대상 계약에 대한 적절한 원가 분석에 의거한 사업비의 합리적 산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담당하는 서울특별시 원가분석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용역, 물품의 제조·구매, 공사의 원가 산정의 적정성 검토
  2. 신기술 또는 특수공법 적용의 타당성 검토
  3. 공법변경, 품목 및 규격변경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② 자문회의의 위원은 의장 1명과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위원 2명을 포함한 30명 이내로 구성하고, 의장은 서울특별시 재무국장이 된다.
- ③ 의장은 자문이 필요한 경우 자문사항의 전문분야를 고려하여 제2항의 인원 중 의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여 회의를 개최한다.
- ④ 그 밖에 자문회의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마. 한국지방세연구원 법정출연금

- 지방재원의 확충과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출연하여 설립·운영하고 있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법정출연금을 (전전년도 보통세의 0.015%) 지원하는 사업으로, 19억 6천 6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 세출 예산 내역 〉

(단위 : 천원)

연도	최종예산	전년이월	예산변경	예산현액	집행액	차년이월	집행잔액
2017	1,965,549	-	-	-	-	-	-
2016	-	-	-	-	-	-	-
2015	1,508,222	0	0	1,508,222	1,446,522	0	61,700
2014	1,975,228	0	0	1,975,228	1,975,228	0	0

- 서울시는 법령이 정한 일정금액을(전전년도 보통세 징수액의 0.015%) 해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고 있음. 2011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설립 이후 2016년까지 전국 지자체가 연구원에 출연한 금액은 381억원 규모이며, 이 가운데 서울시 본청이 출연한 금액은 77억원(2016년 미출연금 포함)으로 총 출연금의 20.2%를 차지하고 있고, 자치구를 포함한 서울시전체 출연금은 94억원으로 총 출연금의 24.7%에 달함.

※ 서울시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2016년 출연금(1,636백만원)은 연구원의 방만한 운영과 서울시 연구지원 실적 미흡을 사유로 시의회 출연동의안(2015.10.30)이 보류 처리된 바 있음.

-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재원은 법령에 의거 전국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으로 지원되고 있으며, 행정자치부의 재정지원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바, 출연금 산정체계의 합리적 개선을 통한 출연규모 축소 조정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음.

※ 출연주체(전 지자체에서 ‘행정자치부와 지자체로 출연 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와 출연기준(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0.015%를 0.01%이내) 및 출연방법(법정 고정출연금에서 ‘연구원 세출예산

연동 변동출연)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 등 관련 기관과의 종합적인 협의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일정규모의 재정을 투자하는 사안에 대하여 출연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정부의 시행령 규정 사항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고권을 침해하는 위헌 소지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 및 대응과 함께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연구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 서울시의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현황 〉

(단위: 백만원)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계
서울시전체 (A=B+C)	968	1,134	1,281	2,303	1,758	1,959	9,403
시분청(B)	795	953	955	1,975	1,447	1,636 (미출연)	7,761
자치구(C)	173	181	326	328	311	323	1,642
출연금합계(D)	3,939	4,597	6,587	7,711	7,136	8,269	38,192

〈 한국지방세연구원 정관 〉

**제10조(감사) ①** 감사는 안전행정부의 지방세정책과장이 되며, 그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연구원의 업무와 재산상황에 대한 감사 및 그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
2. 이사에 대하여 감사에 필요한 의견 요구
3. 이사회 출석 및 발언
4. 이사회 회의록에 기명날인
5. 연구원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를 이사회 및 주무관청에 보고
6. 제5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이사회 소집 요구

- 또한,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으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영 전반에 실질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연구원장의 선임권을 관련 규정(지방세기본법 제145조와 정관 제9조)<sup>8)</sup>에 의거 행정자치부 공무원이 당연직 이사(12명

이내중 1명)와 감사(2인중 1명)를 맡는 등 연구원의 의사결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실정으로 인사행정에 불합리한 측면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정(지방세기본법령 및 정관)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운영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집행부의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역할과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한편, 서울시의회에서는 2016년 제270회 임시회 및 제271회 정례회 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인사와 행정문제 및 서울시 자주재정확충을 위한 업무 실적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음.

8) 지방세 기본법 제145조 및 지방세연구원 정관제9조

《※ 관련규정 》

**지방세기본법 제145조 (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운영)**

- ③ 지방세연구원의 원장 및 감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며, 이사장과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지방세연구원 정관 제9조 (원장)**

- ① 원장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 ◇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개선 추진현황

연 번	구 분	2015년 까지	2016년 이후
1	자치단체 감독기능 강 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사회 감사 1명 - 행정부(지방세정책과장)</li>   <li>○ 인사위원회에 지자체 마춤 - 원장, 부원장, 외부위원 3</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사에 지자체 대표 1명 추가 - 연구원 정관개정('15.12월) - 지자체 감사 선임('16.2월) : 서울시 재무국장</li> <li>○ '16 상반기 서면감사 실시('16.8월) - 11건 지적, 시정요구     ▶ '16년 12월 하반기 서면감사 및 '17년 종합감사 실시 예정</li> <li>○ 인사위원회에 자치단체 위원 위촉 - 경기도 자치행정국장('16.4.1)</li> </ul>
2	부 원 장 임용방식 개 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장이 임명 - 특채 또는 내부승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모에 의한 채용으로 변경</li> <li>○ 공석인 부원장 공모 실시('16. 3,8월) - 적임자 없어 현재까지 공석</li> </ul>
3	박 사 급 연구위원 전 공 다 양 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제학 전공자가 대부분 - 박사 14명중 10명이 경제학 박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세 실무관련 전공자 총원 추진 - 조세법·세무학·행정학 전공자 3명 채용 추진중</li> </ul>
4	석 사 급 위 축 연구위원 처우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리기준 부재 및 보수 열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촉연구원 채용 공정관리 - 전공 부적격자 채용금지 및 특정대학에 편중되지 않도록 관리</li> <li>○ 성과우수 위촉연구원 급여조정 - 3명 보수조정(7.5% 인상)</li> </ul>
5	지자체를 위한 연구 수행방법 개 선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상반기 정기 수요조사시 채택과제만 수행</li> <li>② 전국 지자체 공통된 과제만 수행</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정기 수요조사에 더하여 수시로 과제 요구시 적극 수행     ※ 2016 수시과제 18건 수행중(서울시 4건)</li> <li>② 지자체별 특수한 성격의 과제도 수행 예) ▶ 서울시를 중심으로 한 주택분취득세 결정요인과 전망     ▶ 법인에 대한 지방세 중과제도 개선방안</li> </ol>

연 번	구 분	2015년 까지	2016년 이후
6	지 자 체 공 무 원 역량강화	① 지방소득세 등 3개 과정 운영 - 총7회 1,983명 교육 (서울시 197명)  ② 교육예산 : 209백만원	① 지방세분야 직무교육 강화 : 4개 과정 - 총12회 2,576명 교육(서울시 306명) ▶ 지방소득세 전문가 교육 : 4회 816명(서울시 177명) ▶ 세무직 신규임용자 교육 : 5회 222명(서울시 60명) ▶ 지방세 직무 교육 등 : 3회 1,539명(서울시 69명) ② 교육예산 대폭 증액 - 254백만원(2016) - 593백만원(2017 교육센터 설치예정)
7	지 방 세 납부 홍보	-	○ 지방세 납부 안내 TV·라디오 광고(연6회) - 자동차세(2회), 재산세(2회), 주민세·군등분, 법인지방소득세 등
8	파견공무원 복 무 관리개선	-	○ 지문 인식시스템으로 변경, 초과근무 관리 강화 ○ 세무현장 경험 활용 업무부여 및 지자체 지원업무 강화
9	원 장 임용방식 개 선	○ 이사회 의결로 이사장이 임명 - 정부 추천	○ 시도지사협의회와 시군구협의회에서 각 1명 추천한 자 중 택일하여 이사장이 임명하는 방안 추진중 - 정관개정 통해 추천절차 규정 필요 - 행자부와 협의중
10	출 연 금 축 소	○ 전전년도 보통세의 0.015%	① 단계적 출연율 인하방안(0.015%→ 0.0125→0.010%) 협의중 - 시행령 개정 필요, 행자부와 협의중 ② 출연금 증가율 상한제 도입 검토중 - 0.015%로 상한율을 적용하여 보통세 징수 실적에 따라 출연규모 급증 방지 - 시행령 개정 필요, 행자부와 협의중

※ 아울러 지방세연구원은 지방재정확충 관련 세미나를 서울시와 공동으로 2회 ('15.9, '16.10) 주관한 바 있으며, 서울시 연구과제의 채택률도 65%(42건/65건중)로서 지자체 평균 48%를 상회

## 바. 상시 세금납부 체제 구축

- 시민들에게 납세편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세입 증대에 기여하고 세정업무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년(1억 3백만원) 대비 21.8% 증가한 1억 6천 2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 세출 예산 내역 〉

(단위 : 천원)

구 분	2015년 예산액	2016예산액 (A)	2017예산(안) (B)	증감 (B-A)	(B-A)*100/A
계	102,996	132,682	<b>162,163</b>	29,481	22
공공운영비	43,940	66,290	<b>83,916</b>	17,626	26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대행사업비		66,392	<b>78,247</b>	11,855	17
공기관등에대한 자본적대행사업비	59,056				

- ‘공공운영비’ 8천 3백만원은 휴대폰문자수수료(5천 4백만원), 지로신용카드 납부(2천 2백만원), 편의점수납수수료(6백만원)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년 대비 21.8%(2천 9백만원) 증액 편성한 것임.
- 이는 IT기술의 발전과 스마트폰 기기의 대중화 등 시민 세금납부 패턴의 변화에 부응하며 시민편익증진과 세입증대기여를 위한 것으로, 매년 온라인 납부건수가 증가(2013년 1,611만건 → 2014년 1,675건 → 2015년 1,700만건 → 1,880만건)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 공공운영비 세부 산출내역 〉

과목구분	세부 산출내역		
공공운영비	○ 편의점 수납수수료 57,000건 * 100원	=	5,700천원
	○ 본인인증 23,000건 * 52원	=	1,196천원
	○ 지로, 신용카드납부 225,000건 * 100원	=	22,500천원
	○ 휴대폰 문자수수료 1,880,000건 * 29원	=	54,520천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 대행사업비	○ 위택스 연계 서비스 서울시 분담금 78,247,000	=	78,247천원

- 다만, 문자발송수수료를 전년도 3천 9백만원에 비해 대폭적으로 증액(1천 5백만원 증액)하였는 바, 향후 온라인 납부건수와 문자서비스와의 관계를 고려하는 등 본 사업에 대한 적정한 비용 추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014년도	○ 온라인납부건수 16,752천건 (목표대비 102%달성)
2015년도	○ 온라인납부건수 17,012천건 (목표대비 102%달성)
2016년도	○ 온라인납부건수 17,200천건 목표

**사. 모범납세자 지원**

- 모범납세자 등을 선정 및 지원하고 전자고지 활성화를 통해 종이 고지서 발송을 감소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4억 2천 2백만원) 대비 2.0% 증가한 4억 2천 9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세출 예산 내역 〉

(단위 : 천원)

구 분	2015년 예산액	2016예산액 (A)	2017예산(안) (B)	증감 (B-A)	(B-A)*100/A
계	303,260	421,512	<b>429,529</b>	8,017	1
사무관리비	500	500		△500	△100
기타보상금	302,760	421,012	<b>429,529</b>	8,517	2

- ‘기타보상금’은 전자고지를 통한 납세자에게 납부건당 500원 상당의 마일리지 지급을 위하여 4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년도 4억 2천 2백만원에 비해 2.0%가 증가한 것임.

〈 기타보상금 세부 산출내역 〉

과목구분	세부 산출내역	
기타보상금	○ 마일리지 지급 등	= 429,529천원
	- 마일리지 지급 701,537건*122.14%*123%*500원*65%	= 342,529천원
	- 마일리지 지급(30만원이상 추가분) 174,000건*500원	= 87,000천원

- 마일리지 제공은 인터넷 납부시스템 회원가입자를 확대시키고 이를 통해 납부율 제고와 함께 종이고지서 발송비용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다만, 마일리지 제공에 의한 인터넷 납부시스템 이용자 증대효과는 한계가 있다는 점과 고지서 제작 및 송달 비용을 고려하지 않

고 등기우편 대상건에도 건당 500원의 마일리지를 적립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한 검토가 요망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과도한 마일리지 지급 예산의 사용은 향후에 재정적 부담 문제가 될 수 있는 바(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9)위배 소지), 차후에 적정한 마일리지 금액에 대한 조정과 종이고지서 미생산과 전자매체 이용 활성화를 위해 등기우편 대상의 적립액을 상향하는 등 보다 합리적인 마일리지제도 운영을 위한 집행부의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전자마일리지 개선 및 마일리지 적립예산 현황/‘15년 대상기준】**

구 분	고지세액	고지건수	발송비용	마일리지
일반우편	30만원 미만	706,016건	390원	500원
등기우편	30만원 이상	174,007건	1,950원	500원

※ 건당 30만원 이상 등기송달 근거(시세기본조례 제6조제1항)

9)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하며, 따라서 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의 경비의 금액은 다음연도에 사용할 수 없음을 내용으로 하는 원칙을 의미(국가재정법 제3조·제48조1항, 지방재정법 제7조1항).